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책임연구원 배정희

공동연구원 김기현



연구보고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책임연구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년정책 및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평가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안)와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수립 및 시행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 추진체계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다. 둘째, 기존 정책평가 사례분석이다. 정책평가 사례분석은 다시 평가지표 사례분석과 추진체계 사례분석으로 구분된다. 셋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모델(안) 제안이다. 사례분석 결과와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년정책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이다. 부처별 청년정책 사업 평가 및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현황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정책평가 이론, 정책평가 모형 등 정책평가와 관련된 단행본, 연구 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문헌들이 고찰되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자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평가를 최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에서는 총 12개 정책 평가지표들의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평가지표들의 주요특징과 공통적인 변화추세를 탐색하였으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에서는 세 가지 추진체계 유형에 따라 총 8가지 정책평가 추진체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추진체계 유형별 주요업무, 인력구성, 예산의 특성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의 확정, 영역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영역별 평가지표 세부내용의 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책평가, 평가지표, 평가 추진체계

연구요약

1. 서론

- 본 연구는 청년정책 및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평가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안)와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내용은 ①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② 기존 정책평가 사례분석, ③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모델(안) 제안으로 구성됨.
-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음. 전문가 자문은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평가를 최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자문을 총 3회 실시하였음.

2. 이론적 배경

- 본 연구에서 청년이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며, 청년은 주로 아동, 청소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을 보여줌.

- 청년정책이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됨.
- 청년정책은 대상 정책으로 다른 기능 정책들과 차이가 존재함. 기능 정책은 노동, 복지, 문화 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을 기능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룸. 그러나 대상 정책은 대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의 여러 가지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능 정책을 하위 영역으로 두며, 다양한 기능 중심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됨.
-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20년 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 - 2025)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2월 말에 중앙부처가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제출한 이후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정책평가란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정책평가는 책무성의 확보, 정책정보의 환류, 지식의 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정책평가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 외부평가(평가자), 형성평가 - 총괄평가(평가목적), 과정평가 - 영향평가(평가대상)로 분류할 수 있음. 정책평가 방법은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 / 전실험 설계접근법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최근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는 시민 참여형 정책평가 또는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임. 많은 연구자들은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평가 결과가 정책 환류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3.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

-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에서는 2020년 청년정책 평가, 정부업무평가(중앙 행정기관 특정평가 /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자체평가), 기본계획·시행계획 평가(아동정책 / 청소년정책 / 사회보장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그리고 정책사업평가(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추진배경과 목적 및 방법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총 12개 정책 평가지표들의 평가항목과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평가지표들의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변화추세를 탐색하였으며, 효율적인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평가지표들의 주요 특징 및 변화추세는 다음과 같음. ① 평가지표의 간소화: 많은 수의 평가지표와 중복적인 평가내용에 따른 업무량 증대를 없애기 위해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추가업무를 완화시키려는 추세가 나타남. 평가지표가 객관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체계적인 내용구성과 평가과정 수립이 요구됨. ② 민간·학계 전문가 참여의 확대: 평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남. 그럼에도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 국민참여 비중이 매우 낮으며, 피평가자(실무자)의 의견 반영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③ 부처 / 부서 간 협력과 협업 유도: 부처 / 부서 간 협력 노력 또는 협업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 평가지표들이 상대평가 방식 (등급제)에 따른 서열화와 우수사례 선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협력저하와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

④ 국민만족도 (국민체감도) 조사의 실시 :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와 효과를 정책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만족도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만족도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평가지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례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평가지표의 구성과 간소화를 추진함에 있어 평가대상기관 및 실무자의 의견 반영을 높여야 함. ② 평가단 / 평가위원의 선정기준과 구성과정 등을 공시하여 평가에 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방법을 보완 및 수정하여 부처 / 부서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시도가 요구됨. ④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만족도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⑤ 1년 단위의 정책평가와 더불어 중장기 단위의 정책평가의 계획 및 수립이 요구됨.

4.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에서는 정책평가 추진방식을 크게 평가센터 위탁형, 연구 위탁형,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으로 구분하였음. 평가센터 위탁형의 사례로는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였고, 연구 위탁형의 사례로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였으며,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에서는

정책 고용지원 정책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를 분석하였음.

- 평가 및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센터 위탁형 및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경우 시행계획 및 정책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컨설팅, 모니터링, 포럼 개최 등 부가사업을 수행을 통해 정책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관부처의 정책 현안 대응을 상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구 위탁형의 정책평가와 구별됨. 반면, 연구 위탁형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연차별 사업평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평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인력규모가 큰 편이었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의 인력규모는 15명, 청년 고용지원 정책평가를 위한 인력규모는 14명이었음. 다음으로는 평가센터 위탁형의 인력규모가 연구 위탁형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음. 특히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16명의 상시직원 외에 단기계약직으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추가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음.
- 예산은 평가센터 위탁형과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0년 예산은 약 42억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예산은 약 29억 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고용지원 정책평가를 위한 2020년 예산은 23억 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평가를 위한 2020년 예산은 약 18억 원이었음. 단,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예산은 3억 8,200만원이었었는데, 이는 평가센터 위탁형의 다른 평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연구 위탁형의 경우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소요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5.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

-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 마련을 위해 총 3회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1차 전문가 자문은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안) 마련을 위한 의견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책평가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되었음. 2차 전문가 자문은 청년정책 평가개요(안) 및 평가지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2020년 7월 16일과 7월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 및 세종에서 총 3그룹으로 나뉘어 대면 자문회의로 진행되었음.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 참여하였던 정책평가 전문가 9명에 청년정책 전문가 6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3차 전문가 자문은 2차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개요(안) 및 평가지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차 자문회의와 동일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시행계획 평가개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가 자문의견이 도출되었음.
 - ① 평가목적 :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평가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제도개선 및 제도 간 정합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② 평가대상 : 분야별·영역별 평가가 중요하며, 심층평가 실시가 중요함. 또한 평가대상 청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③ 평가방법 : 청년위원 일정 비중의 의무화가 필요하며, 청년위원 구성시 대표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평가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함. 집체평가가 필요함. 정책유형별 개별 평가기준의 수립이 필요함.
 - ④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가 중요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해야 함. 청년정책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 관심을 도모할 필요 있음. 컨설팅은 부처 평가보다는 지자체

평가에 활용 가능함. ⑤ 평가 일정 : 금년도 시행계획이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일정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평가 일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시행계획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가 자문의견이 도출되었음.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② 정책집행의 충실성 : 모니터링단의 실질적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예산 투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평가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③ 정책성과의 달성도 : 1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에서는 정책성과 달성도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음.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지표가 있어야 함.

●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① 평가센터 위탁형의 장점은 평가의 안정성,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로 다부처 사업 평가에 적합, 평가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 평가절차의 효율성임. 단점은 평가 운영관리 노력 저하 가능, 평가절차 개선 가능성이 낮음, 고비용,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유착 가능성임. ② 연구 위탁형의 장점은 전문영역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 가능, 평가 운영의 유연성 및 신속성,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정책변화의 신속한 반영임. 단점은 평가의 불안정성 및 불연속성,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평가 결과 환류의 어려움임. ③ 부처 산하 기관 활용형의 장점은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평가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이며 단점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평가결과의 신뢰성 미흡, 전문성 부족임.

-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의 타당한 유형 및 예산범위, 유의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가 자문의견이 도출되었음.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 유형으로 약 80%의 전문가들이 평가센터 위탁형이 가장 타당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약 63%의 전문가들이 평가센터 위탁형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평가체계 구축시 유의점으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수립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담당기관의 협조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예산 안정성 확보,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평가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제시되었음.
- 이러한 전문가 자문의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안을 제안하였음.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20-R19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4
- 3.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배경

- 1. 청년정책 9
- 2. 정책평가 21

III.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

- 1. 2020년 청년정책 평가 31
- 2. 정부업무 평가 34
- 3. 기본계획·시행계획 평가 47
- 4. 정책사업 평가 60
- 5. 요약 및 시사점 63

Ⅳ.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71
2. 평가센터 위탁형	73
3. 연구 위탁형	78
4.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83
5. 유형별 요약	86

Ⅴ.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

1. 평가체계 구축안 도출 과정	91
2. 전문가 자문 결과	95
3. 평가체계 구축안	114
4. 결론	124

참고문헌	127
------------	-----

부 록	133
-----------	-----

1. 1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135
2. 2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141
3. 3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152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 내용	6
표 Ⅱ-1. 청년기본법 제정 연혁	18
표 Ⅱ-2. 정책평가 유형	24
표 Ⅱ-3. 평가지표 선정 시 고려사항	26
표 Ⅲ-1. 2020 청년정책 평가 개요	32
표 Ⅲ-2. 2020 청년정책 평가지표	33
표 Ⅲ-3.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개요	35
표 Ⅲ-4.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표	36
표 Ⅲ-5. 2020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요	38
표 Ⅲ-6. 2019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지표	39
표 Ⅲ-7. 2019 교육부 자체평가 지표	41
표 Ⅲ-8. 2019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지표	42
표 Ⅲ-9.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43
표 Ⅲ-10.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44
표 Ⅲ-11. 20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개요	46
표 Ⅲ-12.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47
표 Ⅲ-13.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48
표 Ⅲ-14.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50
표 Ⅲ-15.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51
표 Ⅲ-16.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개요	52
표 Ⅲ-17.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지표	53
표 Ⅲ-18.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개요	54
표 Ⅲ-19.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핵심성과지표	56
표 Ⅲ-20.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개요	58
표 Ⅲ-21.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지표	59

표 IV-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사례	72
표 IV-2.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73
표 IV-3. 고용영향평가	75
표 IV-4. 성별영향평가	77
표 IV-5.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2019)	79
표 IV-6.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2018)	79
표 IV-7.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2019)	80
표 IV-8.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2018)	81
표 IV-9. 특정성별영향평가	82
표 IV-10. 청년고용지원 정책평가	83
표 IV-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85
표 IV-12. 추진체계 유형별 요약	87
표 V-1. 전문가 자문 개요	92
표 V-2. 전문가 자문 문항	93
표 V-3. 자문 참여 전문가	94
표 V-4.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 자문결과	98
표 V-5.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자문결과	102
표 V-6. 전문가자문 결과 - 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장단점 분석	106
표 V-7. 전문가자문결과 - 추진체계 및 평가범위별 예산 타당도	110
표 V-8.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시 유의점	113
표 V-9.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118
표 V-10.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120
표 V-11.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구축안	123

그림 목차

그림 II-1. 청년 연령에 대한 응답결과 (15 - 39세)	9
그림 II-2.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2019)	11
그림 II-3. 청년정책 분류체계(안)	14
그림 II-4. 정책과정 및 정책평가	22
그림 II-5. 시민집중형 정책평가	28
그림 III-1. 20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체계	62
그림 V-1. 청년기본법 시행령 상 평가일정	116
그림 V-2. 청년기본법 시행계획 평가일정 수정안	11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10년간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촉발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청년층은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대상자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 환경의 변화, 비정규직의 확대,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은 계속하여 증가해 왔고, 이는 일자리 영역을 넘어 결혼, 주거, 교육, 건강, 채무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청년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에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로써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되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 - 2025)은 2020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동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

1) 이 장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특징은 대표적인 대상자 정책인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는 달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위성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는 달리 청년정책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2020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정책의 포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청년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영역별 상이한 정책 목표 및 성과 측정방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정책 및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평가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안)와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될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 추진체계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이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므로,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적 검토와 정책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행 청년정책의 정의와 범위,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 평가체계 수립방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책평가 및 제반 평가이론과 평가모형 연구를 살펴보며 정책평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 정책평가 사례분석이다. 정책평가 사례분석은 다시 평가지표 사례분석과 추진체계 사례분석으로 구분된다.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의 경우, 정부 업무평가, 고용영향평가, 사회보장시행계획평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평가 등 주요 정책평가의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3장에 포함되었다.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에서는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평가센터 위탁형, 연구위탁형,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각 유형별 사례에 대해 평가내용, 인력규모, 예산규모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4장에 포함되었다.

셋째,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모델(안) 제안이다. 평가체계 모델(안) 제안을 위해 정책평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15명의 정책평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개요와 더불어 평가지표의 세부내용 및 배점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평가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평가 추진체계의 유형별 장단점 분석, 바람직한 평가 추진체계 유형의 검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5장에 포함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문헌연구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부처별 청년정책 사업 평가 및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현황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정책평가 이론, 정책평가 모형 등 정책평가와 관련된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 다양한 문헌들이 고찰되었다. 사례연구에서는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평가 자료와 함께 정책연구 수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 정부 위탁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개된 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평가센터 및 연구기관의 내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전문가 자문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정책평가를 최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의 전문가 자문이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1과 같다. 전문가 자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제 5장 1절에 기술하였다.

표 I-1. 전문가 자문 내용

자문 시기		자문 내용
1차	5.18 - 5.27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자문] -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장단점 분석 -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시 유의사항 및 구축안 논의
2차	7.16 - 7.17	[정책 평가지표 및 평가개요 자문] - 기존 정책평가 지표들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검토 -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검토
3차	7.23 - 7.28	[정책 평가지표 및 평가개요 수정본 자문] - 2차 자문을 통해 수정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수정본 검토 - 2차 자문을 통해 수정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수정본 검토 - 기타 청년정책 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

○———— 제2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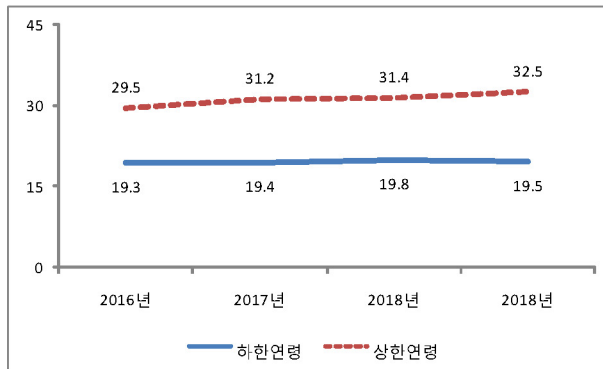
———— 1. 청년정책

———— 2. 정책평가

1. 청년정책²⁾

1) 정책 대상인 청년에 관한 논의

청년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은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특정 연령 시기에 해당하는 생애초기의 연령집단으로 생각한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을 물어본 결과, 하한연령은 19.5세였고 상한연령은 32.5세였다. 대체로 20대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출처: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그림 II-1. 청년 연령에 대한 응답결과 (15 - 39세)

2) 이 절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청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청년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청년은 주로 아동, 청소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청년 시기에 직면하는 이행기는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이행기 특징과 관련하여 존스와 월라스(Jones & Wallace, 1992)는 모래시계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김기현 외, 2020에서 재인용). 이 가설은 전 근대 시기에는 취업, 결혼, 분가, 출산과 같은 이행기가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차이가 컸지만, 근대 이후에는 이행기 시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다시 최근 들어 이행기 간의 시점 차이가 커졌다는 것이다. 곧, 현대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나이와 결혼을 하는 나이, 분가를 하는 나이, 출산을 하는 나이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같은 이행기 내의 개인들 간의 분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근대 이후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대부분 취업을 했지만, 지금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로 취업을 하는 나이가 달라지고 있다.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31세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취업이라는 동일한 이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기가 이루어지는 나이는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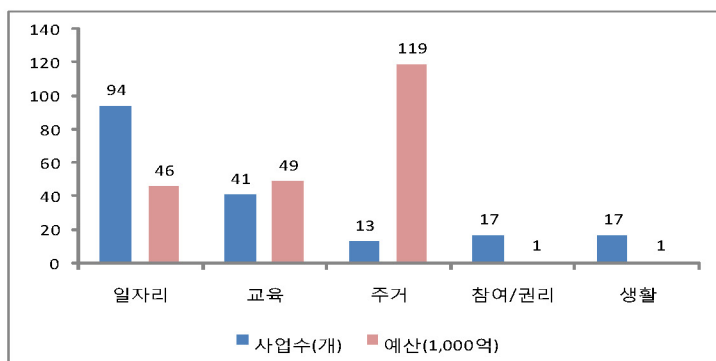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의하기보다 이행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기현(2018)은 청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개인별로 편차를 보이는 성인기 이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청년기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볼 때 2020년 1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와 사회적 연령 측면에서 볼 때의 연령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다만, 하한연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하한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청년정책의 정의와 범위

다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금선 외(2019: 23)는 청년정책을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이란 변금선 외(2019)의 정의를 따른다. 청년 정책에 대한 변금선 외(2019)의 정의에 따를 때, 청년정책의 목적은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수단은 “청년 (직접) 지원”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추진단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사업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2019년에 청년정책 사업으로 제출한 과제는 총 182개 사업이었고 예산은 22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외, 2019). 사업 수나 예산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는데 그 이유는 청년정책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 출처: 변금선 외(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그림 II-2.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2019)

먼저, 청년정책의 범위를 정할 때 대상자인 청년을 어디까지 포괄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온전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청년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돕거나 청년 연령 정의에 일부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 사업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청년정책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연령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은 19세에서 34세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상의 청년은 15세에서 29세(고용 의무제에 한해 34세)로 연령을 달리한다. 지자체의 경우 대구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정책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추진 주체별 청년 연령범위의 차이와 청년의 포괄성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경우, 청년정책사업과 관련되어 실제로 22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2조 청년정책 예산 중 주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 분야 예산에는 주택 공급을 위한 건축비와 전, 월세 대출금 등이 포함된다.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사용된 건축비는 청년정책사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정책사업 예산 상정에 있어서 모든 건축비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볼 때 실제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민간 주택에 들어갈 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대비 정부에서 보급하는 청년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비용의 차이이다. 제일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건축비 자체를 청년 예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출금의 경우도 유사한 쟁점이 존재한다. 대출금은 국가가 보증해 금융권에서 돈이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갚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청년이라면 청년정책사업인 것은 맞지만 대출금 전체를 청년정책 사업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만약 건축비나 대출금 전체를 청년정책 예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예산 규모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청년정책의 분류체계

여기에서는 청년정책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사업을 수집하면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분류를 ① 일자리, ② 교육, ③ 주거, ④ 참여·권리, ⑤ 생활로 제시하였다(변금선 외, 2019).

이것은 일자리부터 교육, 주거를 핵심적인 영역으로 두고 나머지 사업들을 배치하면서 이루어진 분류체계로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권리와 생활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 특정 영역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자리 영역에서 일한 권리를 다룰 수 있으며 교육 영역에서 학습할 권리를 다룰 수 있다. 생활이라는 용어도 모든 것을 포괄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 할 수 있다. 일자리와 교육의 경우 훈련을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교육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훈련 정책을 맞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맞고 있으므로 일자리 영역에 훈련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훈련은 교육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영역에 두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김기현 외(2020)의 연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분류체계는 ① 일자리, ② 교육·훈련, ③ 주거, ④ 참여·활동, ⑤ 복지·생활안정이다. 청년기본법의 시책을 고려해 분류체계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① 일자리, ② 교육·훈련, ③ 주거, ④ 참여·문화·활동, ⑤ 복지·금융·건강 등으로 나누어진다. 김기현 외(2020)는 훈련이 일자리가 아닌 교육분야와 같이 분류되도록 대분류 명칭에 훈련을 추가하였고 참여·권리를 포괄적인 용어인 권리 대신 문화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을 실제 해당 분야의 영역으로 구체화해 복지, 생활안정, 건강 등을 명시하였다.



* 출처: 김기현 외 (2020: 33).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그림 3-9] 인용.

그림 II-3. 청년정책 분류체계(안)

또한 김기현 외 (2020)는 대분류별 중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1-1 취업 지원, 1-2 창업 지원, 1-3 일자리 환경개선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1-1과 1-2는 청년정책 정의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1-3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을 다룬 것이다. 다른 영역의 중분류 역시 이러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2-1 교육·연수·실습 지원, 2-2 훈련·자격 지원, 2-3 교육·훈련 여건개선으로 구분된다. 주거분야는 3-1 주거비 지원, 3-2 주택공급, 3-3 주거 여건 개선으로 구분된다. 참여 및 활동분야는 4-1 정책 참여 활성화, 4-2 문화, 교류, 공동체 활동 지원, 4-3 참여·활동 기반 및 여건 조성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복지·생활안정·건강 분야는 5-1 소득·자산형성 지원, 5-2 비용·부채경감, 5-3 생활안정 여건 조성, 5-4 건강서비스 지원, 5-5 건강 여건 조성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당초 건강 분야를 별도의 대분류로

제한한 바 있으나 실제 청년 대상 건강 사업이 182개 사업 중 2개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아 별도의 대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복지·생활안정 분야와 건강 분야를 합쳐 제시하였다.

4) 청년정책의 특성

정책평가의 대상이 되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청년 정책은 대상 정책으로 다른 기능 정책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기능 정책은 노동, 복지, 문화 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을 기능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정책은 청년일자리정책이 되고 다른 특정 대상 역시 여성일자리정책, 노인일자리정책, 장애인일자리정책 등 일자리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대상 정책은 대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의 여러 가지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능 정책을 하위 영역으로 둔다.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양한 기능 중심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문제이다. 일자리정책에서 청년일자리정책은 전체 일자리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조직 및 인력의 배분 문제이자 한 부처 내의 조정문제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서 청년일자리정책은 한 부처를 넘어서며 여러 부처에서 일자리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부처 간의 유사, 중복 문제에 대한 조정이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대상 중심 정책과는 달리 이행기의 특성을 가지며 정책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상 정책 중에서 여성정책이나 이민자정책, 장애인정책 등은 정책 대상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는 이미 타고난 인구학적 속성이거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과 마찬가지로 이행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아동이나 노인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작 연령만을 특정하면 되지만 청소년 정책과 함께 청년정책은 시작 연령과 동시에 종료 연령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으로의 이행기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이를 특정한 연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말해준다. 전자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총괄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부처 간의 협업이나 협력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후자는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은 물론 이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간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청년정책이 담당하므로 정책 사업들이 이행기 청년정책의 특성을 반영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획이나 계획단계 평가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시행계획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청년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청년 관련 법률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일하는 청년”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었으며, 일몰 대상 법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게다가 청년정책을 일자리정책에 국한해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여러 영역을 담을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였다. 박기춘의원 대표발의로 2014년 3월에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99701)이 최초의 발의법안이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 이 법안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40세 이하로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주관부처를 여성가족부로 제안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핵심적인 사항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책임관 등을 제안하였다. 19대 국회에서는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이어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10709)과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1917647)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청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대 국회였다.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이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024)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였고 주관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2016년 5월 30일에 발의되었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가 6월 13일에 이루어졌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에 임박했던 2019년에 정무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이어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1620),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1778),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4070),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6739),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07738),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11990),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13684),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016948), 정무위 위원장 대안법안(의안번호 2023987) 등 10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청년기본법은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월에 제정되었다.

표 II-1. 청년기본법 제정 연혁

시기	청년기본법 발의 및 제정 연혁
19대 국회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199701)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1910709)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1917647)
20대 국회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의안번호 200024)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1620)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1778)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4070)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6739)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07738)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11990)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13684)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법안 (의안번호 2016948) 정무위 위원장 대안법안 (의안번호 2023987)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월) 및 제정(2월)

20대 국회 법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법안은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 제안법안인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10099)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청년미래 특별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부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당 간의 합의로 마련한 것이었다. 청년미래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청년 연령정의, 청년정책 주관 중앙행정기관, 청년단체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청년기금이나 청년수당과 같은 예산확보 방안 등이었다. 청년 연령정의는 합의 과정에서 18세를 시작연령으로 하는 안과 39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안을 두고 정당 간에 이견이 존재했지만 서로 시작과 종료 연령을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청년 연령은 19세에서 34세로 정해졌다. 청년 연령 정의는 정무위를 거쳐 위원장 대안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년기본법에도 적용되었다.

청년정책 주관 중앙행정기관은 초기에 행정위원회 방식인지, 행정부처 방식

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행정부처로 교통정리가 된 후 어느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초기에 대상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성가족부가 제안되었으며 여러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제안되었다. 청년미래 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기에 기획재정부 안을 검토하였으나 특정 정책 사업을 직접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상 부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되었다.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역시 정부조직법 상 부처 기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총괄 및 조정 경험의 많고 총괄조정기구의 위원장 역할을 국무총리가 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주관부처로 결정되었다. 이 역시 청년기본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단체를 지원하고 청년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큰 이견 없이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법안에 반영되었지만 소관부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된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에 대부분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예산 조성과 관련된 조항들은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법안을 정당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새롭게 청년기금을 조성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기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제9조 ③항에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국민참여 입법센터, 2020 ; 국무조정실, 2020a).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출을 받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므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자체에 대한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수립되므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14개 중앙부처 청년 사업에 대한 예비 평가를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0년 청년정책 업무지침 및 평가계획을 마련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서 전달하였다(국무조정실, 2020b).

국무조정실(2020b)이 발표한 평가계획을 보면, 2020년 평가는 각 부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을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2021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광역 지자체는 2020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평가는 2020년 8월에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이 아닌 국무조정실 직제 제23조 4항 2호에 근거하고 있다.

2020년 평가 대상이 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은 청년정책 수에 따라 1과 2그룹으로 구분되었다. 1그룹은 주요 청년정책 사업이 4개 이상인 경우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다. 2그룹은 3개 이하인 경우로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등이다. 평가지표는 정책인프라와 정책과제로 나뉜다. 정책인프라는 청년 참여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규정 정비여부, 청년위원 위촉여부, 청년 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로 이루어

진다. 정책 인프라 중 소통, 홍보, 참여 강화는 소통 의지와 노력 정도, 정책 홍보 의지와 노력 정도, 간담회 및 교육 실적 등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 집행의 적정성을 정량과 정성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책 의미 및 효과성을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청년 민원, 제안 처리 실적, 부처 간 협업 실적 등에 대해 정성평가한다.

2. 정책평가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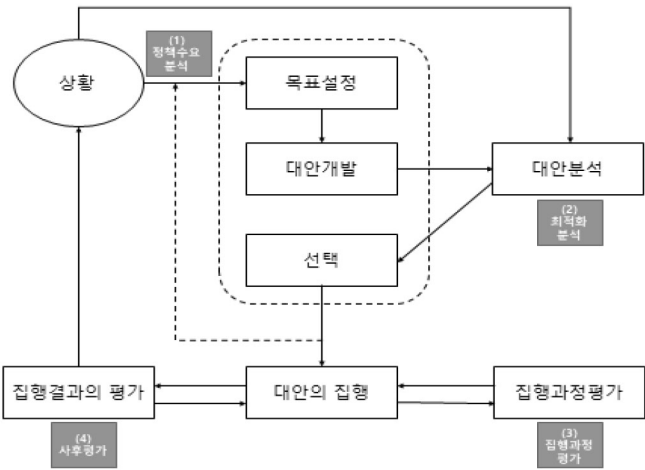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란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이운식, 2018: 18)’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란 추진 되는 정책이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정책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으며 의도한 서비스는 원활히 제공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비용은 정책의 효과나 편익을 고려할 때 타당한 수준인지, 정책이 달성할 것으로 목표한 바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등의 평가 이슈들에 대해 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노화준, 2018).

노화준(2018)에 따르면, 정책과정 및 정책평가의 과정은 <그림 II-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는 사회적인 상황변동에 따른 정책수요에 의하여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상황변동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상황변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또는 정책대상자, 영향의 강도와 특성 등에 대해 정책 수요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책수요분석에 기초하여 목표설정을 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안개발 및 대안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최적화 분석이라 한다. 세 번째는 선택된 정책이 실제로 정책 의도 및 목적에 따라 효과적

3) 이 절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게 되며, 이를 집행과정평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사후평가라고 한다. 정책평가란 광의로는 정책수요분석, 최적화분석, 집행과정평가, 사후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협의의 정책평가란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의 과정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집행과정평가와 사후평가만을 의미하며, 집행 이전에 실시되는 정책수요분석과 최적화분석은 정책분석이라고 칭한다(노화준, 2018). 본 연구에서 정책평가란 협의의 정책평가인 집행과정평가와 집행결과의 평가를 의미한다.



* 출처 : 노화준 (2018 : 15)의 그림1-3을 수정.

그림 II-4. 정책과정 및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남궁근, 2019). 첫 번째는 책무성 확보이다.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지불한 세금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형성할 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는 정책의

형성, 집행 및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에서 그 내용을 정당화할 책임을 가지며, 정책평가는 이러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정책정보의 환류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정책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 정책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 정책관리자, 정책 집행자에게 환류되며,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축적이다. 정책은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는 인과이론으로 볼 수 있다 (남궁근, 2019). 정책평가 과정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의 미검증된 정책가설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를 통해 특정 정책수단이 특정 정책 목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며,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주로 활용되는 정책평가 유형 분류 방식은 평가자에 따른 분류, 평가목적에 따른 분류,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이다.

먼저 평가자에 따른 정책평가 유형을 분류하자면,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노화준, 2018; 이윤식, 2018). 자체평가란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자율적으로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에 해당되는데, 2020년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결과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평가란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특정 정책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면 외부평가가 된다.

평가목적에 따라 정책평가 유형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대별된다(김지원, 2019). 형성평가란 정책 집행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책 집행상태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란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정책집행 종료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대상에 따른 정책평가 유형은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김지원, 2019). 과정평가란 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이 초기에 수립된 계획과 절차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영향평가란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표 II-2. 정책평가 유형

분류기준	정책평가 유형	평가 개념
평가자	자체평가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평가
	외부평가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의 외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
평가목적	형성평가	정책 집행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책 집행상태의 결과를 평가
	총괄평가	정책의 계속적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정책집행 종료 후 그 결과를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평가대상	과정평가	정책이 수립된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영향평가	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 및 검토하는 평가

* 출처 : 김지원 (2019 : 27 - 29). '정책평가론'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정책평가 방법

정책평가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정책평가 방법은 크게 실험 설계접근법과 비실험 / 전실험 설계접근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험설계접근법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조사대상 배정의 무작위성 등을 확보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실험 설계접근법, 준실험 설계접근법, 수정 설계접근법이 포함된다. 실험설계접근법은 평가이론과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주로 양적 분석을 위주로 진행된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 비실험 설계접근법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이윤식, 2018 ; 김지원, 2019).

비실험평가 설계접근법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 대상의 선발배정에 무작위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 및 사업의 간여조작 여부가 불분명한 평가방법으로, 전실험 설계접근법,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접근법, 의사결정중심 평가접근법, 사용자 지향적 평가접근법, 감응적 평가접근법,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한 평가접근법이 포함된다(이윤식, 2018). 비실험 접근법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낮고, 평가이론 및 사업모형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진 다양한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장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평가는 비실험 설계접근법 중 하나인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접근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지표란 '어떤 한 체제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 통계'로 정의된다(이윤식, 2018 : 111). 평가지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작성 정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를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이윤식, 2018).

Hatry(1999)는 평가지표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윤식, 2018에서 재인용). 먼저 적실성이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임무 및 목적, 측정하려는 성과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데 적합해야 한다. 또한 지표는 평가대상 사업의 중요한 면을 측정해야 하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표들은 정책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지표 측정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들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평가지표는 상호 중복적이고 고유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II-3. 평가지표 선정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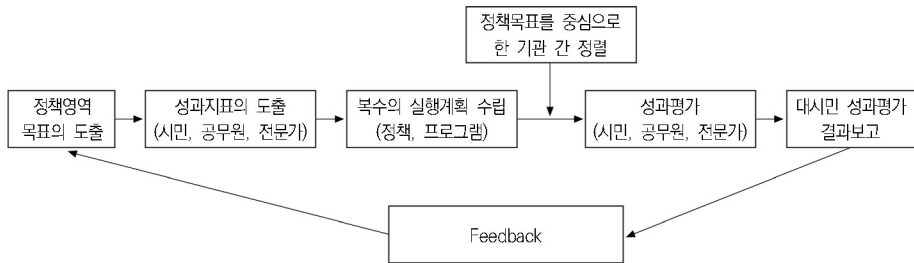
고려사항	내용
적실성	사업의 임무 및 목적, 측정하려는 성과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데 적합해야 함
중요성	평가 대상 사업의 중요한 면을 측정해야 함
이해가능성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사업결과에 대한 영향력	정책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평가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자료 획득 가능성	평가지표 측정을 위해 적절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함
고유성	평가지표는 상호 비중복적이며 고유한 것이어야함
조작가능성	사업담당자가 조작할 수 없어야 함
포괄성	사업의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해야 함

* 출처 : 이윤식 (2018, 113). '정책평가론 제3판' 내용을 표로 재구성.

4) 정책평가 이론에 대한 고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책평가 이론 중 하나는 시민 참여형 정책평가이다. 이근주(2018)는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과정에서도 국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근주(2018)에 따르면, 정책은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목표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전문가 또는 정부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정책평가 참여가 예전보다 매우 용이해졌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모니터링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정책평가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평가에 참여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정책 환류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오철호(2018) 역시 정책평가가 보다 실효성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 설계시에 정책대상자 집단 또는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석환(2018)은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Citizen - focused Policy Evaluation)의 제안을 통해 정책평가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책목표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실제로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 및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과지표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과지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범죄율의 감소”라는 지표를 사용하려고 한 반면, 시민들은 “신고를 했을 때 바로 경찰이 도착해주는 정도”, “거리에 경찰이 순찰하는 빈도” 등의 지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이석환, 2018). 이 모델은 정책평가 중 특히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시민참여는 계획 - 집행 - 성과에 이르는 전체 정책평가 과정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이석환 (2018: 323). 시민집중형 정책평가 [그림 2] 인용.

그림 II-5. 시민집중형 정책평가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이다. 김종호 (2016)는 정책평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달하여, 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가결과가 활용되어 정책이 개선되고, 공공문제 해결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심재승 (2019) 역시 현재의 정책평가는 정부부처 등 한정된 활용자가 한정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평가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후생의 증대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 제3장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

- 1. 2020년 청년정책 평가
- 2. 정부업무 평가
- 3. 기본계획·시행계획 평가
- 4. 정책사업 평가
- 5.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주요 정책평가의 사례를 살펴본다. 각 정책평가의 개요와 평가지표를 분석함으로써,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평가로는 2020년 청년정책 평가, 중앙행정기관 특정 평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12개 사례를 분석한다.

1. 2020년 청년정책 평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 - 2025)이 수립될 예정이며, 부처 및 지자체는 202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⁵⁾.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2021년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20년 현재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정책 평가의 목적은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4) 이 장은 이선우 박사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가 작성하였음.

5)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8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9조).

또한 청년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1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주요 청년정책 4개 이상의 1그룹(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과 주요 청년정책 3개 이하의 2그룹(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으로 구분한다. 2020년에 추진된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며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방법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된다. 이를 위해 정책인프라(청년 참여 기반 구축, 소통·홍보·참여 강화)와 정책과제(정책 집행의 적절성, 정책의지 및 효과성)에 관한 총 11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표 III-1. 2020 청년정책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 • '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1년말 평가 예정 • '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을 위해 '20년 청년정책 평가 시행
평가목적		•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노력과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
평가 대상	기관	• 14개 중앙행정기관 • 1그룹(주요 청년정책 4개 이상):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 2그룹(주요 청년정책 3개 이하):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과제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모두 평가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
	기간	• '20.1.1 ~ '20.12.31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정책인프라(청년참여 기반 구축, 소통·홍보·참여 강화) 및 정책과제(정책

항목	내용
	집행의 적절성, 정책의지 및 효과성)에 관한 11개 평가지표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2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참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 개선계획을 수립·이행 •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평가 일정	•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제출('20.4) • 부처별 추진실적 1차 제출('20.12) 및 보완('21.1) • '20년 청년정책 평가결과 발표('21.3)

* 출처 : 국무조정실 (2020b). '20년 청년정책 업무지침 및 평가계획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되며, 정부업무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개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추진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정책의 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 4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계획이 제출된다. 다음으로 2020년 12월, 부처별 추진실적 1차를 제출하여 2021년 1월, 추진실적에 대한 보완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2020년 청년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표 Ⅲ-2. 2020 청년정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정책 인프라 (40%)	청년참여 기반 구축	정량	• 관련 규정 정비 여부 • 청년위원 위촉 여부 • 청년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 등	20
	소통·홍보·참여 강화	정성	• 소통 의지·노력 정도 • 정책 홍보 의지·노력 정도 • 간담회 및 교육 실적 등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정책과제 (60%)	정책 집행의 적절성	정량 / 정성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성과목표 달성도	30
	정책의지 및 효과성	정성	• 정책영향 (효과)이 발생한 정도 • 청년 민원·제안 처리 실적 • 부처 간 협업 실적	30

* 출처 : 국무조정실 (2020b). '20년 청년정책 업무지침 및 평가계획

2020년 청년정책의 평가지표는 위의 표 III-2와 같다. 먼저 청년정책의 정책 인프라 항목은 총 40점 배점으로 청년참여기반 구축에 대한 정량평가 (20점)와 소통·홍보·참여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20점)로 구성된다. 청년참여기반 구축에 대한 평가지표는 관련 규정의 정비 여부, 청년위원의 위촉 여부, 청년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포함하며, 소통·홍보·참여 강화에 대한 평가지표는 소통 의지와 노력 정도, 정책 홍보 의지와 노력 정도, 간담회 및 교육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정책과제에 관한 평가항목은 총 60점 배점으로 정책 집행의 적절성 (30점)과 정책의지 및 효과성 (30점)에 관하여 평가지표가 마련되었다. 정책 집행의 적절성은 추진계획의 충실성과 성과목표 달성도에 근거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가 병행되며, 정책의지 및 효과성은 정책영향 (효과)이 발생한 정도, 청년 민원 및 제안 처리 실적, 부처 간 협업 실적에 대해 정성평가를 수행한다.

2. 정부업무 평가

1)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중앙

행정기관 특정평가는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무총리가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 등을 수행한다. 특히 2020년도 평가 시행계획에는 2020~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각 부문별 국민체감 성과·정책효과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등급이 공표되고, 우수기관 및 업무자에 대해서는 포상이 지급된다.

표 III-3.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⁶⁾ '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체감 성과 및 정책 효과 항목에 대한 가중치 확대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성과를 평가 - 국정 통합 관리 및 국정성과 제고
평가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평가방법	- 부문별 주관기관이 평가, 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산출 -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수요자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I-4 참조

6) 정부업무평가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목	내용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기관 평가등급 공표 및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 출처 : 국무조정실 (2019a).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20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표는 III-4와 같다. 먼저 일자리·국정과제 항목은 총 65점 배점으로 기관장 노력(5점), 성과지표 달성(25점), 정책효과(20점), 협업(5점), 국민체감도(5점), 일자리기관 공통(5점) 등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규제혁신 항목은 규제혁신 성과(6.5점), 규제혁신 체감도(2점), 규제정비 활동(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혁신 항목은 혁신문화(1점), 혁신성과(7.5점), 국민체감도(1.5점)에 관한 내용이 평가된다. 정책소통 항목은 총 배점 15점으로 정책소통 활동(3점), 정책소통 성과(8.25점), 정책소통 만족도(3.75점)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시이행 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정성(± 0.6), 추진성과(± 2.1), 기관장 노력(± 0.3)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점이 가감된다.

표 III-4.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일자리· 국정과제 (65%)	기관장 노력	정성 / 정량	• 기관장의 현장 소통 및 성과점검, 애로해소 노력 등	5
	성과지표 달성	정성 / 정량	•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 여부	25
	정책효과	정성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20
	협업	정성	• 다수부처 협업과제 선정, 협업노력, 협업성과 등	5
	국민 체감도	정성	• 주요정책과제 전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5
	일자리 기관공통	정량	• 중앙행정기관별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노력도 평가	5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규제혁신 (10%)	규제혁신 성과	정량 / 정성	• 규제 샌드박스 성과 • 테마별 일괄정비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성과 • 적극행정 추진성과	6.5
	규제혁신 체감도	정량 / 정성	• 규제혁신 소통 실적 및 노력도 등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2
	규제정비 활동	정량 / 정성	• 규제심사절차, 일몰규제 정비 등	1.5
정부혁신 (10%)	혁신문화	정량 / 정성	• 기관장 혁신리더십 • 자율 혁신학습·활동, 혁신지향 인센티브 운영 성과	1
	혁신성과	정량 / 정성	• 서비스 확산, 사각지대 해소 성과 • 혁신지향 공공조달 • 균형인사 (여성, 장애인) • 국민참여 및 민관협력 갈등관리 • 기관별 신뢰도, 청렴도 • 공공서비스·업무방식 혁신성과 • 자율혁신 사업 추진성과	7.5
	국민 체감도	정량 / 정성	• 국민평가단·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 혁신성과 홍보	1.5
정책소통 (15%)	정책소통 활동	정량 / 정성	• 주요 정책과제 사전협의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 온라인 이슈관리	3
	정책소통 성과	정량 / 정성	• 언론 소통성과 • 온라인 소통성과 • 기관장 소통성과 • 부처 협업 소통성과	8.25
	정책소통 만족도	정량 / 정성	• 소통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 빅데이터 분석	3.75
지시이행 (±3%)	계획수립 적절성	정성	• 지시사항 이행방안 충실도 • 이행 / 추진기간의 적극성·신속성	±0.6
	추진성과	정량 / 정성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2.1
	기관장 노력	정량	• 기관장 주관의 이행성과 점검노력	±0.3

* 출처 : 국무조정실 (2019a).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명시한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0개)은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를 시행하였다. 특히 2020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주요정책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상위목표(전략목표)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표 III-5. 2020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
평가목적		-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 - 주요정책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 전환 및 상위목표(전략목표) 관리 강화
평가대상	기관	•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0개)
	주요정책	• 기관별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재정사업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재난안전사업 - 균형발전세부사업
	행정관리역량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항목	내용
평가방법	• 중앙행정기관별로 '20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후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점검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반영

* 출처 : 국무조정실 (2019a).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9 고용노동부 자체평가는 40개 과(팀)의 총 58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공통 지표와 정책단계 유형별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공통지표는 성과달성도, 과제중요도, 협업노력도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단계 유형별 지표는 정책입안 단계, 정책집행 1년차 단계, 정책집행 2년차 단계로 나누어져 계획의 타당성, 추진과정의 충실성, 집행과정의 적절성, 적극적 정책추진, 정책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상황 개선, 상용직 비중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여성·고령층 고용 개선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40대 고용부진과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년층 지원 강화, 퇴직연금 제도 확충, 청년층 대상의 직업·진로지도 실시 필요성 등의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였다.

표 III-6. 2019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공통지표	성과달성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수준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 성과지표의 도전성
	과제중요도	과제중요도	• 정부정책 기조와의 연관성 고려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협업노력도 (가감점)	협업노력도	• 타부처, 타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정책입안 단계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정책내용과 목적달성의 적합성 • 의견수렴 절차의 적절성
		정책의 시의성	• 정책수립의 시기적 타당성과 적절성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일정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정책집행 1년차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후속조치 충실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적극적 정책추진	적극적 정책추진역량	• 적극적 정책 추진의 여부 • 대응성
정책집행 2년차 이상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후속조치 충실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의 발생 정도	•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여부

*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2019 교육부 자체평가는 69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계획수립의 적절성 (15점), 집행과정의 충실성 (25점), 정책효과 (50점), 대표성 및 노력도 (10점) 4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방법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소관 과(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소위원회별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였다. 또한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별로 7등급으로 등급화 하였으며, 편차를 조정하여 과제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다. 평가결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 평가 및 기록의 내실화’,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확산’, ‘모든 아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 조정’ 등 14개 과제가 ‘매우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되었다. 반면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래교육 기반 조성’, ‘교육기관 정보보호 강화’,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등 14개 과제가 ‘미흡’ 또는 ‘부진’으로 평가되어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2019 교육부 자체평가 지표

평가지표	세부내용
계획수립의 적절성 (15점)	• 정책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등 설정의 적절성, 전년도 환류정도 및 국민소통계획 등을 평가
진행과제의 충실성 (25점)	• 추진계획별 적기 완수 여부, 대내외 홍보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등을 평가
정책효과 (50점)	• 성과지표 달성여부, 계획시 의도한 정책 효과 및 부수적 효과 발생 여부, 향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
대표성 및 노력도 (10점)	•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업무추진 전 과정에서의 부서 노력정도 등을 평가

* 출처 : 교육부 (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9 국토교통부 자체평가는 25개 정책관(108개 과)의 46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난이도, 과제이행 노력도, 과제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과제 난이도 평가의 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포함되었으며, 과제이행

노력도는 계획이행의 충실성과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 따라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제목표의 달성도는 성과지표의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책만족도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되었다. 총 46개의 관리과제의 178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의 평균 달성률은 92.13%로 나타났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의 경우,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목표치 미달성,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수 이상 과제(9개)는 ‘철도망 확충 및 철도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및 교통안전 강화’,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 확산’, ‘교통비 절감·광역버스 확대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7개)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민생활·안전행정을 위한 지하 및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등으로 평가되어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2019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과제 난이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량화 및 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 여부 - 사회적가치 실현 지표 가점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과제이행 노력도	계획이행의 충실성	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정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과제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정도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
	정책만족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으로, 24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116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표 III-9.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평가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통합성 확보 - 정부 국정비전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 산출·결과 중심의 평가 운영
평가 대상	기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실적 포함)
	과제	24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116개 지표 (정량 89개, 정성 27개)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방법		- 정량평가의 경우 지표별 목표달성도를 절대평가 - 정성평가의 경우 시·도를 구분하여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 (상대평가)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I-10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개 -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결과 부진 지표 대상 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포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실태파악

* 출처: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5개 국정목표와 16개 국정전략에 따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정량평가 지표는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개하고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하며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반면, 평가결과가 부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정책환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표 III-10.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구분	세부평가지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정성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정량 / 정성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시도 지방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 등 7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정량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등 5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정량	•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성 / 정량	• 소상공인 정책 우수사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중앙 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 6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정량	• 기술 기반 창업 실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효율화 실적,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량 / 정성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보호결정 수급률 등 17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량 / 정성	•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요보호 아동 보호 내실화율 등 9개

국정목표	국정전략	구분	세부평가지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정량 / 정성	•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등 19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정량 / 정성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등 재해감소율,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수 감소율, 취약·위기 가족 지원을 등 10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정량 / 정성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률,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률 등 7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정성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례,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지방예산 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량 / 정성	•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도로명판 확충, 상세주소 부여실적 등 6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정량 / 정성	•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달성률, 임도시설 실적율 등 20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안보와 책임국방	정량 / 정성	• 중무계획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비상대비훈련 우수 사례,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등 5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정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

4)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정합성 유지와 협업 노력을 평가함과 지자체 고유사무(전략사업)의 평가 및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에 목적이 있다. 평가대상은 각 지자체별 소관업무이며,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민간참여 2/3 이상)를 구성하여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및 활용하도록 한다.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및 개인성과,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 등에 반영한다.

표 III-11. 20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
평가목적	-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정합성 유지 및 협업 노력 평가 -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고유사무(전략사업) 등을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
평가대상	각 지자체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평가
평가방법	-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민간참여 2/3 이상)를 구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자체평가 -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
평가결과 활용	- 자체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년도 성과관리계획, 개인 성과 등에 반영 -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자체평가 운영에 반영

* 출처 : 국무조정실 (2019b).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2020 ~ 2022).

3. 기본계획 · 시행계획 평가

1)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한다⁷⁾.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은 아동정책 전반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체감도 향상이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책이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표 III-12.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인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 ~ 2019)이 수립 • 이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
평가목적	• 아동정책 전반에 걸친 질적 수준 제고 및 체감도 향상
평가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책
평가방법	• 총 14명의 평가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명, 외부 전문가 5명)을 구성 •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를 위한 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진 양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를 진행 •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I-13 참조

7) 아동복지법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목	내용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컨설팅 진행

* 출처: 김미곤 외 (2018).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총 14명의 평가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9명, 외부 전문가 5명)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를 위한 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진 양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정책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표 III-13.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중앙정부 평가지표	기획의 적절성	정성	•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20
	계획의 집행도	정량 / 정성	• 예산집행률 • 추진계획 이행도	30
	성과 달성도	정량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지표 신뢰성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50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기획의 적절성	정성	•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 여부	10
	추진 방식의 적절성	정성	• 수립 절차의 적절성 •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20
	성과 달성도	정량	• 드림스타트 수혜율 •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	60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기반 구축	정량	•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 아동친화도시 구축	10

* 출처: 김미곤 외 (2018).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는 중앙정부 평가지표와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로 나누어져 있다. 중앙정부 평가지표는 기획의 적절성 (20점), 계획의 집행도 (30점), 성과달성도 (50점)을 평가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는 기획의 적절성 (10점), 추진방식의 적절성 (20점), 성과달성도 (60점), 기반구축 (10점)으로 구성되었다. 각 평가내용에 따라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의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가 진행되었다.

2)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다⁸⁾.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제4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8)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표 Ⅲ-14.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4항)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간 격차 해소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114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50%, 격년제) 청소년정책
평가방법	• 국정과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와 연계하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 시·도별 청소년정책 효과를 점검하여 국정운영과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별 청소년의 삶의 질 분석 • 청소년의 활동·참여 영역과 보호·복지 영역,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시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15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위원단의 최종평가의견을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별하여 정책컨설팅을 추진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설명회.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되었으며, 정책형성 단계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량 / 정성)과 정책기반 확보 수준 (정량 / 정성), 정책집행 단계는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성)과 정책소통 노력 (정량 / 정성), 정책성과 단계는 정책목표 달성도 (정량)와 정책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량)을 평가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각 평가내용은 시·도 총 12개, 시·군·구 총 1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표 III-15.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정책형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도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군·구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수준	공통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 (국비 및 시·도비 제외)
정책집행	추진과정의 효율성	공통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정책소통 노력	시·도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시·군·구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정책성과	정책성과 및 효과성	시·도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청소년정책의 파급효과
		시·군·구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설명회.

3)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⁹⁾ 및 동법 시행령 제6조¹⁰⁾에 근거하여 2018년 사회보장

9)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588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시행계획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목적은 사회보장의 비전과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함과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평가대상 사업은 2018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183개 과제였으며,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31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19개) 관련 과제를 포함하였다. 각 부처별로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과제별로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처별 자가진단을 강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추진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표 III-16.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요 시행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
평가목적	• 사회보장의 비전과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
평가대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31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19개) 총 183개 과제
평가방법	• 부처별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 항목에 대해 사업 부처가 자체평가를 시행하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이 자체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작업 수행 • 과제별 주요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I-17 참조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목	내용
평가결과 활용	• 주요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효과성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출처: 박노옥, 원종학, 박선영, 우지은, 임소영 (201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18년 사회보장 시행계획의 평가는 사업개요 (20점), 추진과정 (25점), 성과달성도 (55점)까지 3개 평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사업개요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을 평가지표로 포함하였으며, 추진과정 항목은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실적의 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목표달성도까지 3개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였다.

표 III-17.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사업개요 (20점)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과정 (25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
성과달성도 (5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의 수준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지표)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
	목표달성도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출처: 박노옥 외 (201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4)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다¹¹⁾.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¹²⁾.

표 III-18.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를 심의
평가목적	- 법적 근거에 의한 정책의 평가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환류
평가대상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대 분야의 총 179개 과제 (저출산 분야 86개, 고령사회 분야 86개, 대응기반 강화 분야 7개 과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88호, 2017. 9. 12., 일부개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항목	내용
평가방법	• 각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 평가(기초평가) 및 핵심성과지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핵심 성과지표 총 13개 중 11개의 평가지표 활용 (2개 지표 “고령친화산업 비중” 및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산출 불가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으로 제외)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19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자료 등으로 활용 • 평가결과는 향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평가체계 개선에 반영

* 출처 : 박중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는 첫째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진과정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둘째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은 2018년 중앙정부(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대 분야(저출산 분야 86개, 고령사회 분야 86개, 대응기반 강화 분야 7개 과제)로 총 179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본래 총 190개였으나, 성과평가 부재, 달성률 산출 불가, 사업개편, 성과지표 산출 불가 등의 사유로 11개 과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III-19.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핵심성과지표

평가항목	성과지표	주요 정책 내용
저출산 분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고용률	• 청년고용대책 • 노동개혁 과제 • 일학습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 사교육 경감 • 공교육 정상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령화 분야	노인상대빈곤율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노인교통사망률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여성고용률	• 여성 재취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고용률	• 정년제도 개선 •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반

* 출처 : 박중서 외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 분야 7개 핵심성과지표(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임신유지율, 청년고용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

시간, 사교육비 부담)와 고령사회 분야 4개 핵심성과지표(노인 상대빈곤율, 노인 교통사망률, 여성고용률, 고령자고용률)를 기준으로, 각 핵심지표와 관련이 있는 시행계획 각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행계획의 내용이 핵심성과지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5)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¹³⁾. 6대 역점분야(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 구매조달’ 혁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 구축)를 중심으로 20개 중점과제와 7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13)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87호, 2018. 7. 19., 제정)
주요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정부혁신 사업 및 과제의 발굴·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표 III-20.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대통령령훈령 제387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 6대 역점분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 구축)를 중심으로 20개 중점과제, 79개 세부사업이 추진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 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방법	•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혁신평가단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을 선발하여 이루어진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3단계로 등급을 구분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I-21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는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3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방법은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을 선발하여 이루어진 국민현장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평가지표는 혁신역량·실행(10점), 혁신 성과(75점), 혁신성과홍보(5점), 국민체감도(10점), 적극행정(가점 5점)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21.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주요 정책 내용	배점
혁신역량·실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학습활동	10
혁신 성과	핵심사업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13
	포용적 행정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강화 정책조정 노력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21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제도 활용 성과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 정책 협업·조정 • 협업성과 • 갈등관리	24
	신뢰받는 정부	• 부처별 신뢰도 • 부처별 청렴도 (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 성평등 기여도 •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 선제적 서비스 성과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혁신 추진성과	17
혁신성과홍보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5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10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성과	+5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4. 정책사업 평가

1)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고용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청년고용정책 인식 조사, 고용장려금 사업 심층평가,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청년고용정책 인식 조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살펴보는 것과 전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강호, 송수중, 이해나, 2019). 또한 청년고용정책이 실제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재지역과 규모에 따라 표집된 898개 기업이었으며, 기업의 일반현황 및 채용 동향에 관한 문항, 기업의 청년고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문항, 그리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인식조사 대상 정책사업으로는 청년 인건비 지원 정책, 청년고용 세제혜택 정책, 경영자금·환경개선 지원 정책, 채용·홍보 지원 정책, 일 경험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포함하였다.

청년고용장려금 사업 심층평가는 고용장려금 사업 중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검토, 사업의 효과성 측정, 향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기영, 손경현, 2018).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인 사업장과 근로자, 사업수행 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 실태의 정성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는 창업지원에 따른 고용의 양적·질적 성과를 평가함과 청년창업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상호 외, 2018). 2018년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21개 사업 중에서 재정투입이 증가한 3개 사업(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기업자금융자 중 청년전용사업)이 평가대상이었다. 평가대상인 3개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로, 주된 사업대상이 39세 미만의 청년층이다.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년자금융자사업,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참여자를 처리 집단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미시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월평균 보수총액 기준의 임금 효과 및 피보험자 기준의 고용효과 등을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 후 그룹인터뷰 대상자를 재추출하여 미시적 평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창업 전 노동 활동, 창업 과정의 어려움, 창업지원 기업의 성과 및 고용변동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현황, 전달체계, 고용효과 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상시적 평가업무 전담조직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다.

20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중앙정부 일자리사업(183개)을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평가, 사전협의, 고용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소관부처, 수행

기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이 진행되었으며, 기초조사 및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와 고용성과평가(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별 성과등급이 (S ~ D) 부여되었다. 평가결과는 2019년도 신설·변경 일자리사업 사전 협의 및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 출처: 고용노동부 (2018 : 2).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그림 1-1].

그림 III-1. 20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체계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및 주요 정책평가 특징

본 장에서는 2020 청년정책 평가,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12개 정책평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로 인한 추가업무를 완화시키려는 추세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합동평가 지표 수가 2018년 156개에서, 2019년 122개로, 그리고 2020년 116개로 간소화되었다. 평가를 간소화하는 것은 대상기관들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나태준, 2012; 이한준, 김성태, 2020). 특히 많은 수의 평가지표와 평가로 인한 업무량 증대는 운영상 평가의 중복과 관대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허만형, 김주환, 이석환, 2008; 김주환, 2009; 조현정, 이삼열, 2015).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정책평가들의 평가지표 간소화를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평가지표가 객관성과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내용구성과 평가과정 수립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이한준, 김성태, 2020).

둘째, 공통적으로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 민간, 학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성과와 효율 및 만족도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혁신평가단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을 선발하여 이루어진 국민현장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또한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평가기관 연구원 9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아동정책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피평가자(실무자)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민참여 비중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셋째,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부처 / 부서 간 협력 노력 또는 협업실적을 포함하여 정책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였다.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경우 각 기관의 협력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정성평가를 하였으며 부처 간 소통성과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9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타부처 / 타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까지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기존의 정책평가들이 상대평가 방식(등급제)을 적용하여 기관 / 부처 / 부서별로 차등을 나누거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경쟁을 제고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추진과 목표달성을 유도할 수 있지만, 평가대상 간의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력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창길, 최성락, 2009). 더 나아가 평가내용보다는 평가순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실제 정책추진과 성과에 관한 노력보다 평가결과 자체를 중시하게 할 수 있다(Gibbons & Murphy, 1990 ; Stanton, 1991).

넷째, 기존의 정책평가 대부분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와 효과를 정책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만족도(또는 국민체감도)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만족도조사는 공공서비스 및 정책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윤수재, 2002). 박중훈(201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국민지향적인 정책수행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국민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만족도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평가지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책수행기관 및 실무자들의 합리적이며

국민지향적인 정책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20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평가내용 중 주요 정책과제 전체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는 5점 배점이며, 201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평가는 혁신성과에 관한 국민평가단의 평가비중을 전년도에 비해 두 배로 강화했음에도 10점 배점에 불과하였다.

2) 시사점 및 제언

기존의 정책평가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 및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의 구성과 간소화에 있어서 평가대상기관 및 실무자의 의견 반영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평가지표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의 양적인 간소화보다는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평가과정을 수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가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실무자의 자문을 얻기 위한 과정을 추가하거나, 청년정책 평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구성에 관한 적절성을 묻는 메타평가(meta - evaluation)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단 / 평가위원의 선정기준과 구성과정 등을 공시하여 평가에 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외부전문가의 선정과정과 기준의 정당성, 참여자의 윤리 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남궁근, 2010 ; 류영아, 2010).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경우 명확한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공개하여 평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부처 / 부서 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평가 방식의 정책평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상대평가 방식은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적 업무방식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이는 부처 / 부서 간 업무협력과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장려하는 현행 정책평가들의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대평가 항목에 절대평가를 가미한 형태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종합 평가 순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거나 종합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보다는, 각 지표별로 평가 순위가 높은 기관들을 포상하고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평가의 오류와 부작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창길, 최성락, 2009).

넷째, 국민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만족도 조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책만족도 조사의 참여자가 조사대상 정책 활동에 대해 분명한 인지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중훈, 2010). 특정한 연령층, 성별 등 정책대상이 명확한 정책의 평가일 경우, 직접적인 정책대상자와 일반국민의 정책인식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홍보 및 소통에 관한 설문과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와 추진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전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과 관련한 소통에 기울인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과 직접적인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들이 체감한 정책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1년 단위의 정책평가와 더불어 중장기 단위의 정책평가를 계획·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정책 및 사업 특성별로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청년 대상의 정책은 다른 정책분야와 비교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편이다. 궤도에 오르기 전의 정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한 가지 평가과정 안에 편입시키기보다는 각 정책별로 적합한 평가방법과 평가기간 단위를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정책 평가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한다면 정책평가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 — 제4장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사례분석

-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 2. 평가센터 위탁형
- 3. 연구 위탁형
- 4.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 5. 유형별 요약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평가 추진 방식은 크게 ① 평가센터 위탁형, ② 연구 위탁형, ③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센터 위탁형은 정부부처에서 특정 시행계획 추진실적 또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분석·평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유형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고용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성별영향평가가 있다. 연구 위탁형은 정부부처가 매년 연구용역 방식으로 특정 시행계획 또는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되었으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과제별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실시되었다.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은 개별 부처에서 위탁집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 기관의 고유예산으로 해당 부처의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유형이다. 이는 평가센터 위탁형과

14) 이 장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외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평가 예산이 기관의 고유 사업운영비라는 점에서 평가 센터 위탁형과 구분된다.

표 IV-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사례

추진체계 유형	정책유형	평가명	평가 추진 기관
평가센터 위탁형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정책사업	고용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 위탁형	시행계획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정책사업	청년 고용 지원 정책평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평가 사례는 추진체계 유형별로 서로 다른 특성 및 장단점을 가지며, 이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시사점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표 IV-1〉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별 대표적 사례에 대해 주요 내용, 인력 구성, 예산 등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별 청년정책 사업의 평가가 아닌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의 사례를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 평가센터 위탁형

1)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중앙·지자체 시행계획 취합 및 이행사항 점검,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및 포럼 운영, 청소년정책 현안 정책 분석이다.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14개씩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 평가가 아닌 정책 실행 여부만을 점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정책 관련 현안분석 및 정책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분석·평가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력구성은 5명이며, 센터장 1명과 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1명, 행정원 1명을 포함한다. 2020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전체 예산은 3억 8,200만원이다.

표 IV-2.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항목	내용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평가 추진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근거법령	청소년정책기본법 제 14조 제5항	
센터 연혁 ¹⁾	2010	•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등 수행

항목	내용	
	2016 ~ 2017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5항)으로 지정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시범평가 시행 (1,2차)
	2018 ~ 현재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제5항)으로 지정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본평가 시행 (매년 : 17개 광역지자체, 격년 : 228개 기초지자체)
주요 업무 ²⁾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17개 광역자치단체 (매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114개씩 격년)를 대상으로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 시행 • 분석·평가 대상 우수 청소년정책 발굴·확산 • 평가결과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중앙·지자체 시행계획 취합 및 이행사항 점검	•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종합 및 현황 분석 •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개선방안 제시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및 포럼 운영	•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및 현안중심 이슈별 정책 자료 작성 • 정책 현안 대응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청소년정책 현안 정책 분석	•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청소년정책 현안 이슈 대응 자료 제공 • 청소년백서 발간을 위한 지원 협조
인력 구성 ²⁾	5명 (센터장 1명, 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1명, 행정원 1명)	
예산 ²⁾	3억 8,200만원 (2020년)	

* 출처 : 1) 청소년정책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www.ypec.re.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설명회.

2)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는 2011 -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되었으나, 2013년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고용영향평가 사업을 수행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정책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평가, 각 부처별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산출,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 이외에도 평가 발표회, 월간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발간 등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해 홍보하고 고용영향평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상시 인력구성은 16명이지만,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월 10 ~ 30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예산은 41억 5,400만원이다.

표 IV-3. 고용영향평가

항목	내용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평가 추진기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및 시행령 제22조 ~ 23조	
센터 연혁 ¹⁾	2007.03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실 설치
	2007.03 - 2009.12	• 평가방법론 기초연구 및 시범사업 평가
	2010.01 - 2010.12	• 고용영향평가 시범사업 (한국고용정보원)
	2011.01 - 2012.12	•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 (한국고용정보원)
	2013.01 - 2014.12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
	2015.01 - 2016.12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
	2017.01 - 2019.12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
	2020.01 - 2022.12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

항목	내용	
주요 업무 ²⁾	정책 고용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및 정책제언 실시 2020년 22개 고용영향평가 과제 수행 중
	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기금사업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 -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10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약 1,000개 내외의 재정사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산출 (일자리사업 170여개, R&D사업 350여개, SOC사업 250여개, 문화·예술·체육사업 50여개, 보건·복지사업 50여개, 농림수산 관련 사업 130여개 등)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개정법령안 가운데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법령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고용영향평가 활용도 제고 및 저변 확대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연구·발전, 평가 결과 발표회, 월간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발간 등 평가 결과의 대외 홍보 활동 등 수행
인력 구성 ²⁾	16명 (소장 1, 평가기획팀 9, 정책평가팀 3명, 재정사업평가팀 3명) +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을 위한 계약직 월 10 ~ 30명 채용 운영	
예산 ²⁾	41억 5,400만원 (2020년)	

* 출처 : 1)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s://www.kli.re.kr/eia>)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 한국노동연구원 (2020). 2020년 고용영향평가 사업계획서.

3)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 제10조의2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20년 현재까지 해당 센터를 통해 수행되어 왔다.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로서 16개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현안을 지원하는 업무, 전문가 포럼 개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성별영향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력 구성은 총 8명으로, 센터장 1명, 박사급 연구원 4명, 석사급 연구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 예산은 29억 4,500만원이다.

표 IV-4. 성별영향평가

항목	내용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평가 추진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근거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	
센터 연혁 ¹⁾	2006	한국여성개발원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M (Gender Mainstreaming) 연구본부 구축 및 부설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성인지통계센터 설치
	2008	여성부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2010	여성부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재지정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정책연구실 구축 및 부설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성인지예산센터 설치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구축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재지정
	2015	여성가족부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재지정
주요 업무 ¹⁾	성별영향평가 센터 총괄관리·지원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정 운영 중이며, 지역 평가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항목	내용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및 정책개선실적보고서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현안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여성가족부 현안 연구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인력 구성 ¹⁾	8명 (센터장 1명, 박사급 연구원 4명, 석사급 연구원 3명)	
예산 ²⁾	29억 4,500만원 (2019년)	

* 출처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wdi.re.kr/center/gia/history.do>)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3. 연구 위탁형

1)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매년 연구사업 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019년에 수행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2018년 추진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2020~2025)을 위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개월이었으며, 연구 예산은 2억 2,500만원이었다. 2019년 평가연구의 경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 연구예산보다 2.5배 더 소요되었다.

표 IV-5.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2019)

항목	내용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연구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제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연구기간	2019.05.27. - 2019.12.23. (7개월)
연구내용	• 2018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0 ~ 2022) 수립 위한 기초연구
예산	2억 2,500만원

* 출처: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018년에 수행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개월이었으며, 2017년 중앙부처 아동정책 161개 사업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아동정책을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 인력은 책임연구자 2명 및 공동연구진 1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었다, 연구 예산은 9,000만원이었다.

표 IV-6.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2018)

항목	내용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연구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제명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연구
연구기간 ²⁾	2018.06.25. - 2018.12.21. (6개월)
연구내용 ¹⁾	• 2017년 중앙부처 아동정책 평가(161개 사업) • 2017년 지자체 아동정책 평가(17개 시·도) • 아동정책 성과의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논의
연구인력 ¹⁾	15명 (책임연구자 2명, 공동연구진 13명)
예산 ²⁾	9,000만원

* 출처: 1) 김미곤 외 (2018).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연구.

2)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는 매년 연구사업 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019년에 수행된 2018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다. 2018년 중앙부처의 사회보장 시행계획과 관련된 199개 사업을 평가하고 과제별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약 6개월이었으며, 연구 인력은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었다. 연구 예산은 5,380만원이었다.

표 IV-7.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2019)

항목	내용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연구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제명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기간 ²⁾	2019.05.01. - 2019.10.31. (6개월)
연구내용 ¹⁾	• 2018 중앙부처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199개 사업) • 과제별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연구인력 ¹⁾	5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4명)
예산 ²⁾	5,380만원

* 출처: 1) 박노옥 외 (201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2018년에 수행된 2017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위탁을 받아 수행하였다. 2017년 중앙부처의 사회보장 시행계획과 관련된 198개 사업을 평가하고 과제별 주요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10월

까지 약 6개월이었으며, 연구 인력은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었다. 연구 예산은 4,900만원이었다.

표 IV-8.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2018)

항목	내용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연구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제명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연구기간 ²⁾	2018.05.03. - 2018.10.01. (6개월)
연구내용 ¹⁾	• 2017 중앙부처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198개 사업) • 과제별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연구인력 ¹⁾	7명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6명)
예산 ²⁾	4,900만원

* 출처: 1) 오윤섭 외 (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2)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3)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책 분야 또는 정책 사업별로 시행하는 심층 성별영향평가로, 매년 다른 주제에 대하여 연구위탁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수행한 정책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19년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총 9개로, 노동환경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기타분야 생활 체감형 정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지역관광콘텐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중 6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신학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각각 1개의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9개 모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예산총액은 3억 3,150만원이며, 1개 사업별로 평균 3,68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표 IV-9.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명	연구 수행기관	연구기간	예산
생활체감형 정책Ⅰ(노동환경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7.31. - 2019.11.30	4,490만원
생활체감형 정책Ⅱ(기타 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7.31. - 2019.12.20	3,577만원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8.29. - 2019.12.20	3,127만원
경찰관서 편의시설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7.31. - 2019.11.30	3,581만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7.31. - 2019.12.31	3,588만원
지역관광 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07.31. - 2019.12.15	3,563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8.28. - 2019.12.20	3,572만원
영유아 보육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7.31. - 2019.11.30	3,715만원
아동정책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7.31. - 2019.11.30	3,937만원

* 출처 : 온 - 나라정책연구 (<http://www.prism.go.kr>)에서 2020년 4월 24일 인출

4.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1) 청년 고용 지원 정책평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정책허브센터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설된 청년고용지원팀은 두 번의 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2019년 1월 청년정책허브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진행하며,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의 성과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며,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외에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정책 인식조사를 통해 청년 고용정책 수립방향의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고용참여단 운영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청년정책연구개발팀 5명과 청년정책 모니터링 팀 8명을 합하여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예산은 23억 원이다.

표 IV-10. 청년고용지원 정책평가

항목	내용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평가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센터 연혁 ¹⁾	2016.4.	‘청년고용지원팀’ 신설 : 대학일자리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청년고용정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청년 고용정책참여단 운영)
	2018.1.	‘청년정책허브지원단’ 으로 확대 개편 : 청년고용 포함한 청년 정책 기획 및 실행을 총괄 지원하는 ‘청년정책 허브기능’ 수행 위해 조직확대 개편

항목	내용	
	2019.1.	'청년정책허브센터'로 확대 개편: 청년정책연구개발팀, 청년정책 모니터링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으로 센터 조직 구성
주요 업무 ²⁾	청년정책 총괄 분석 및 심층연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고용정책 심층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국내외 청년정책 분석
	청년관련 현황 분석 및 콘텐츠 개발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정책 인식 조사,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운영 등 정책소통과 현장모니터링 지원, 청년 진로 및 취업지원 콘텐츠 개발
	청년 현장의견 수렴 및 분석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운영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학일자리센터 (101개) 컨설팅 및 운영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성과평가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평가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서비스 체감도 조사,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
인력 구성 ²⁾	총 14명 청년정책연구개발팀 : 6명 (박사급 연구원 2명, 석사급 연구원 3명, 행정원 1명) 청년정책모니터링팀 : 8명 (박사급 연구원 3명, 석사급 연구원 4명, 행정원 1명)	
예산 ²⁾	23억 원 (2020년)	

* 출처 : 1)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keis.or.kr>)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2) 한국고용정보원 (2020a). 청년센터 운영.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고용노동부는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사업평가센터를 통해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고용보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고용보험 사업평가가 통합되어 함께 수행되고 있다. 주된 업무는

2020년 기준 166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내년도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등을 수행한다. 인력구성은 총 15명으로, 박사급 연구원 4명 및 석사급 연구원 11명을 포함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는 청년 정책연구개발팀 5명과 청년정책 모니터링팀 8명을 합하여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의 예산은 13억 4,400만원이며, 고용 보험사업 평가예산은 4억 3,500만원이다.

표 IV-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항목	내용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평가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중앙일자리평가팀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고용보험사업 평가)	
센터 연혁 ¹⁾	20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사업 평가 시작
	2016	고용보험사업평가와 일자리사업평가 통합 수행
	2017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에 근거한 효율화 체계 마련
	201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183개 사업)
주요 업무 ²⁾	'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2020년 일자리사업 (166개 사업) 성과 평가 고용보험사업 32개 포함
	'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준비	일자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특정 사업군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제도·전달체계 개선방안, 사업 구조개편 방안 등 도출)
인력 구성 ²⁾	15명 (박사급 연구원 4명, 석사급 연구원 11명)	
예산 ²⁾	총 17억 7,900만원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13억 4,400만원 고용보험사업 평가 : 4억 3,500만원	

* 출처 : 1)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keis.or.kr>)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2) 한국고용정보원 (2020b). 2020년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업무보고.

5. 유형별 요약

유형별 평가 및 사업 범위와 인력규모, 예산을 요약하면 <표 IV-12>와 같다. 먼저, 평가 및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평가 범위를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 및 사업 범위가 결정된다. 주요 정책 사업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의 경우 다수의 정책사업을 동시에 평가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한 심층 사업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 및 사업범위와 관련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센터 위탁형 및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경우 시행계획 및 정책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컨설팅, 모니터링, 포럼 개최 등 부가사업 수행을 통해 정책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관부처의 정책 현안 대응을 상시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구 위탁형의 정책평가와 구별된다. 반면, 연구 위탁형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연차별 사업평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진다.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평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인력규모가 큰 편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의 인력규모는 15명, 청년 고용지원 정책평가를 위한 인력규모는 14명이었다. 다음으로는 평가센터 위탁형의 인력규모가 연구 위탁형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특히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16명의 상시직원 외에 단기계약직으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추가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예산은 평가센터 위탁형과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0년 예산은 약 42억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예산은 약 29억 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고용지원 정책평가를 위한 2020년 예산은 23억 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를 위한 2020년 예산은 약 18억 원이었다. 이는 평가센터 위탁형 및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경우 평가사업뿐만 아니라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사업들을 시행하며 상시적으로 소관부처의 정책대응을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예산은 3억 8,200만원이었는데, 이는 평가센터 위탁형의 다른 평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위탁형의 경우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소요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위탁사업의 평균 예산은 3,70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는 5,000만원 내외 수준이었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2018년 예산은 9,000만원이었으며,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함께 포함된 2019년의 예산은 2억 2,500만원이었다.

표 IV-12. 추진체계 유형별 요약

유형	평가명 (평가수행연도)	소관 부처	평가 / 사업 범위 ¹⁾					인력규모 (명) ²⁾	예산 (억 원)
			A	B	C	D	E		
평가 센터 위탁형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2020)	여가부		○	○		○	5	3.82
	고용영향평가 (2020)	노동부				○	○	16 (+단기계약 10~30명)	41.54
	성별영향평가 (2019)	여가부				○	○	8	29.45
연구 위탁형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2019)	복지부	○	○				n/a	2.25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2018)	복지부	○	○				15	0.90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2019)	복지부	○					5	0.53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2018)	복지부	○					7	0.49
	특정성별영향평가 (2019)	여가부				○		n/a	0.37 (평균)

유형	평가명 (평가수행연도)	소관 부처	평가 / 사업 범위 ¹⁾					인력규모 (명) ²⁾	예산 (억 원)
			A	B	C	D	E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2020)	노동부				○	○	14	23.0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2020)	노동부				○		15	17.79

* 주 : 1) 평가사업범의 A = 시행계획 - 중앙부처; B = 시행계획 - 17개 광역자치단체; C = 시행계획 - 228개 기초자치단체;
D = 개별사업 평가; E = 부가사업 수행 (컨설팅, 모니터링, 포럼 등)
2) 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인력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n/a (not available)로 표기함.

○ — 제5장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안

- 1. 평가체계 구축안 도출 과정
- 2. 전문가 자문 결과
- 3. 평가체계 구축안
- 4. 결론

1. 평가체계 구축안 도출 과정

1) 전문가 자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안 마련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은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안) 마련을 위한 의견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은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책평가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정책평가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자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은 청년정책 평가 개요(안) 및 평가지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은 2020년 7월 16일과 7월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7.16. 오전) 및 세종(7.17. 오전 / 오후)에서 총 3그룹으로 나뉘어 대면 자문회의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1차 조사에 참여하였던 정책평가 전문가 9명에 청년정책 전문가 6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 자문은 2차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개요(안) 및 평가지표(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검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차 자문회의와 동일한 자문단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5) 이 장은 배정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V-1.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1차	조사목적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구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검토
	조사시기	2020년 5월 18일(월) - 5월 27일(수)
	조사대상	정책평가 전문가 9명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2차	조사목적	청년정책 평가개요(안) 및 평가지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검토
	조사시기	2020년 7월 16일(목) - 7월 17일(금)
	조사대상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 15명
	조사방법	서울 및 세종에서 자문회의 실시 ※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자문으로 대체
3차	조사목적	수정된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에 대한 최종 전문가 의견 검토
	조사시기	2020년 7월 23일(목) - 7월 28일(화)
	조사대상	정책평가 전문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 15명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2) 전문가 자문 문항

1차 전문가 자문의 영역은 두 가지로, ①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및 장단점 검토, ②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시사점 도출이다.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및 장단점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시사점 도출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추진체계로 가장 적합한 유형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평가센터 위탁형 및 연구 위탁형으로 평가 체계가 구축될 경우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연구진이 제시하고, 예산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 시 유의할 점 및 기타 조언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의 영역은 크게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검토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검토로 구성되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관련해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를 구성하고, 누락된 평가지표, 제외해야 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및 점수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또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와 관련하여 평가목적, 평가 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 받았다.

3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2차 전문가 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평가지표(안) 및 평가개요(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검토 받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V-2. 전문가 자문 문항

차수	자문 영역	세부 문항
1차	Ⅰ.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및 장단점 검토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분류의 적절성 검토
		2. 유형분류에 따른 평가사례 및 평가기관 적합성 검토
		3. 평가센터 위탁형의 장점 및 단점
		4. 연구 위탁형의 장점 및 단점
		5.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장점 및 단점
	Ⅱ. 청년정책 평가 추진 체계 시사점 도출	6.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의 적절한 유형
		7. 평가센터 위탁형의 평가범위별 소요예산 및 적절성 검토
		8. 연구 위탁형의 평가범위별 소요예산 및 적절성 검토
		9.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추진체계 구축시 유의점
		10.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추진체계 관련 기타 조언
2차	Ⅰ.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검토	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타당성 검토 (누락된 평가 지표, 제외해야 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및 점수 등에 대한 의견 제시)
	Ⅱ.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검토	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타당성 검토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차수	자문 영역	세부 문항
3차	Ⅰ.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검토	1. 수정된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
	Ⅱ.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검토	2. 수정된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
	Ⅲ.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시 유의사항	3.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3) 참여 전문가

전문가들의 선정은 연구진 내·외부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졌다. 정책평가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1차 자문의 경우, 현재 또는 최근에 주요 정책 평가 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정책평가 연구위탁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총 9명이 참여하였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에 대해 검토하는 2차 자문에서는 1차 자문에 참여한 정책평가 전문가 9명과 함께 청년정책 전문가 6명이 추가되어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3차 자문에서는 총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표 V-3. 자문 참여 전문가

이름	소속	자문 참여		
		1차	2차	3차
권** (A)	OO대학교	○	○	○
박** (B)	한국OO연구원	○	○	○
이** (C)	한국OO정보원	○	○	○
하** (D)	한국OOOOO연구원	○	○	○
유** (E)	OO대학교	○	○	○
강** (F)	한국OOOO연구원	○	○	○
류** (G)	한국OOOO연구원	○	○	-

이름	소속	자문 참여		
		1차	2차	3차
김** (H)	한국OO개발원	○	○	○
고** (I)	한국OO정보원	○	○	○
김** (J)	OO대학교	-	○	○
전** (K)	OO시 OOOOO재단	-	○	○
오** (L)	한국OOOO개발원	-	○	○
김** (M)	한국OO연구원	-	○	○
박** (N)	OO연구원	-	○	○
김** (O)	한국OOOO연구원	-	○	○

2. 전문가 자문 결과

1) 평가개요 및 평가지표 전문가 자문 결과

시행계획 평가개요 및 평가지표 구축안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가개요와 관련하여 나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평가목적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평가와 매년 시행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단순히 청년정책 사업을 각 부처가 충실히 잘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그치기보다는 청년정책 전반의 제도개선 및 제도 간 정합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이 일자리정책에 국한되어 있는지, 주거, 복지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청년의 욕구 및 필요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중요함이 강조하였다.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분야별·영역별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책별 성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틀로 모든 정책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평가의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영역별로 각 특성에 따른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진은 182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평가와 함께 매년 주요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평가 대상 청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대다수 정책사업들이 ‘청년 정책 기본계획’ 하에서 처음 수립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사업들이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21년 발표될 ‘청년 기본계획’상의 ‘청년정책’ 정의에 따라 핵심 청년정책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중 1/4 이상은 청년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거나, 평가위원회 심사 전에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청년정책평가단의 의견 수렴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단 및 온라인 청년패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많은 청년 참여자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평가위원회 구성시 청년을 포함할 경우, 청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평가 위원회 인원을 20명 내외로 제안하였으나, 청년정책의 주요 평가 영역이 5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 평가위원의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 평가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의 주요 정책평가가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로 진행되는데,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결과의 차이가 큰 단점이 있으므로 1박 2일 집체평가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구성할 때 유형별

평가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서 평가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보고가 형식적인 서면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의 검토와 향후 과제 논의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모두 평가결과 환류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금년도 평가시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정도를 높게 평가해서 평가의 실익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그리고 많은 정책평가에서 활용하는 정책 컨설팅의 경우, 부처평가에 활용하기보다는 지자체에 활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일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전년도 평가결과가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는가이다. 2020년 7월 28일 의결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상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시행령 제 5조). 그리고 금년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평가결과가 통보되기 다섯 달 전인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 4조).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결과가 발표되므로, 사실상 전년도 평가결과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는 결국 금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이 아닌 내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은 2차년도가 아닌 3차년도 계획수립에만 반영 가능하다. 현재 시행령상의 일정은 12월 31일까지의 평가자료 제출과 평가결과 통보 사이에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통해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 부처 간 우열을 가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어 정책을 개선시키는데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의 즉각적인 반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표 V-4.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 자문결과

유형	자문 결과
평가목적	①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평가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지표는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사업들에 대한 평가지표로 이해됨. 이러한 평가지표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 혹은 가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② 제도개선 및 제도 간 정합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제도 개선 및 제도 간 정합성 강화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큰 정책 성과라고 생각함 (전문가 F, M, B)
평가대상	① 분야별·영역별 평가가 중요 - 청년정책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사업의 분야나 영역이 정해져야 영역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음. 영역별 평가가 필요함 (전문가 B, I, H) ② 심층평가 실시 중요 - 심층평가는 당해연도 청년관련 주요한 핵심이슈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1-5년차에 걸쳐 제시한다면 본 평가가 가지는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전문가 G) ③ 평가대상에 청년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애초 개별부처의 청년사업들이 “범부처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목적의 타당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의 계획처럼 182개 사업을 전수하여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및 위원회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략 체계와 부합하는 대표사업들을 추려내어 정부부처로 하여금 평가를 받게 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 않으면, ‘평가부담 과잉’, ‘182개 사업의 청년정책전략체계와의 연동 어려움’ 등의 문제가 예상됨 (전문가 A)

유형	자문 결과
평가방법	① 청년위원 일정 비중의 의무화 -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중 1 / 4 은 청년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거나, 평가위원회 심사 전에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 비중 높여야 함. (전문가 C, J, K) - 평가에 당사자 목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가위원회 1 / 4를 청년으로 하고, 청년정책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드시 포함한다면, 다소 많은 참여자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됨 (전문가 O) ② 청년위원 구성시 대표성 확보에 대한 고려 필요 2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5명 이상의 청년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하고 있는바, 참여 청년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청년단체 등 유관조직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집체평가시, 이러한 대표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의사에 포획되는 문제가 예상됨 (전문가 A) ③ 평가위원회 인원 확대 및 익명성 보장 - 첫째, 평가 위원회 인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주요 평가 영역이 5개인데 20명 내외의 평가인원으로는 영역별로 4명의 평가 위원임. 그리고 여기에 청년을 1 / 4씩 포함 시킬 경우 영역별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전체 평가위원의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 평가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으면 함. 평가자가 공개되면, 평가자에 대한 공무원 등의 업무협박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객관적 평가를 담보하기 어려움 (전문가 O) ④ 집체평가의 필요성 -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은 적절함. 다만, 이러한 평가가 보건복지부는 서면 평가 - 대면 평가 순으로 실시하는데, 서면 평가가 개별 위원들이 자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다보니 매뉴얼을 적용하는 데 개인 간 차이가 큰 단점이 있음. 이에 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환경부 등의 평가는 집체식으로 1박 2일 등을 실시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계속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간 평가 격차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결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전문가 F) ⑤ 유형별 평가기준 수립 필요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사업 유형별 평가 기준’을 보다

유형	자문 결과
	상세하게 기술하여, 21년 평가 시행 시 평가 위원간 사업 목적에 대한 가치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형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향후 각 분야별 전문가 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전문가 C)
평가결과 활용	① 평가결과 환류 중요 - 실질적인 평가가 되었으면 함. 평가때는 관심이 있지만,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정책담당자들은 잊어먹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차년도 평가시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정도를 높게 해서 평가의 실익을 담보했으면 함 (전문가 O)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 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청년정책조정위의 보고가 형식적인 서면보고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가결과의 검토와 논의가 내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필요 (전문가 G) - 평가과정과 내용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되어야 함 (전문가 O) ③ 청년정책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 관심 도모 필요 -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청년정책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 도모 필요 (전문가 E) ④ 컨설팅은 지자체에만 활용 - 중앙부처의 사업에서 컨설팅을 하는 방식의 실효성은 매우 적음. 개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적어도 부처 공무원 이상의 기초자료와 배경 지식 등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근거한 컨설팅은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임 (전문가 F)
평가 일정	① 금년도 시행계획이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하도록 일정 수립 - 평가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21 시행계획 수정·보완과 22년 시행계획 수립임. 5년 단위 정부 계획 수립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일정을 생각한다면, 평가일정과 계획수립 간 일정을 잘 조정해야 함 (전문가 F) - 평가 일정을 현재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평가의 결과가 그다음 해 계획 수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가 시점을 보다 앞당기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② 평가 일정 준수를 위한 장치 필요 - 전년도에 평가와 관련하여 전체 일정이 설정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유형	자문 결과
	자료제출, 평가 진행, 피드백 등에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움. 자료 제출, 평가관련 피드백 등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부처나 정책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함 (전문가 O)

다음으로 평가지표와 관련한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진은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정책성과의 달성도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과 관련되어, 많은 전문가들은 1차년도 평가에서는 세 가지 영역 평가항목 중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많은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성과의 달성도에 많은 배점을 할당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첫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각 청년정책 사업들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등에 맞게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 정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별 정책들이 주로 어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책집행의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실질적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단의 의견이 정책집행과정에 환류되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업 예산 및 인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으나, 추후 세부지표 개발을 통해 유관기관의 대상에 대해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책성과의 달성도와 관련해서는 1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에서는 정책성과 달성도의 비중을 낮추고, 점차 진행되면서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또한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치 자체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V-5.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자문결과

유형	자문 결과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 비중 강화 필요 • 1차년도 평가이므로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비중 높이고, 계획 수립시 청년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방점을 두어야 함 (전문가 C, J, K) ②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평가 필요 • 계획수립 적절성에서 “대상”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함.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으며,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문가 B)
정책집행의 충실성	① 모니터링단의 실질적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모니터링단 운영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환류되어 정책변화에 영향 주고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함 (전문가 C, J, K) ②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 필요 • 예산투입 및 1인당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 필요함 (전문가 M, L) • 사업예산 분석시 예산과 인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평가의 명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명료해야 함. 부처 간인지 민간단체와의 관계인지 명확히 서술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H)
정책성과의 달성도	① 정책성과 달성도의 비중 감소 필요 • 정책성과 달성도는 비중 낮출 필요 있다. (전문가 C, J, K) ②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정책목표 달성도를 계획 당시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로 볼 때, 목표치 수립의 소극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임. 물론, 계획수립의 적절성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이 5점으로 점수 부여되기는 했으나, 청년문제에 대한 대응 및 정책추진의 적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 G)

2) 평가 추진체계 전문가 자문 결과

(1) 추진체계 유형별 장단점 검토

정책평가 추진체계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시행계획 평가 또는 정책사업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다. 평가내용의 충분성,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예산의 충분성,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표 V-6>과 같은 유형별 장단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평가센터 위탁형의 장점으로는 ① 평가의 안정성, ②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로 다부처 사업평가에 적합, ③ 평가절차의 효율성, ④ 평가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가 주로 언급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평가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센터 위탁형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연구 위탁형보다 시간을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질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B, C, D, E, F, H, I). 또한 중장기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장점은 평가센터를 위탁받는 연구기관 내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높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였다(전문가 B, C, D, E, G). 특히 청년정책 기본계획처럼 다양한 부처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여 부처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부처 사업 평가의 경우 종합적, 전문적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한 연구센터 위탁형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전문가 A).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장점은 평가결과의 환류와 정책개선 효과였는데, 정부 부처와 평가센터 간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평가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전문가 F, G, H). 마지막으로 평가절차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연구 위탁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년 연구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재반복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E).

한편 평가센터 위탁형의 단점으로는 ① 평가 운영관리 노력 저하 가능성, ② 평가절차의 개선 가능성이 낮음, ③ 고비용, ④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유착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먼저, 평가센터 위탁형의 경우 평가방법 및 평가시스템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내부 전문가들의 노력 투입이 저하되는 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C, F). 이와 유사한 문제점으로, 평가센터의 평가역량이 부족하거나 평가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개선 및 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전문가 G). 세 번째로는 연구 위탁형에 비해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전문가 G).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으로는 평가기관이 일원화될 경우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유착 가능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전문가 A).

다음으로 연구 위탁형의 장점으로는 ① 전문영역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 가능, ② 평가운영의 유연성 및 신속성, ③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④ 정책변화의 신속한 반영이 주로 언급되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전문영역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의 경우, 연구 위탁형은 주로 정책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위탁을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절하며, 평가 전반의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B, D, E, F, I). 두 번째로 평가운영의 유연성 및 신속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절차나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을 시에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평가센터 위탁형 또는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보다 신속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전문가 C, G). 세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였다(전문가 G). 네 번째 장점으로는 매년 평가연구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책변화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전문가 H).

연구 위탁형의 주요 단점은 ① 평가의 불안정성 및 불연속성, ②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③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④ 평가 결과 환류의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연구 위탁형의 경우 예산확보와 전문 담당 인력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아 안정적인 평가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전문가 C, D, G, H, I). 또한 매년 위탁기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책평가의 시계열과 연속성 확보가 어려우며, 평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매년 평가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전문가 D, F, I). 두 번째로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평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연구 위탁형의 경우 실질적인 평가가 소관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모두 종료된 4월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 집중할 시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C, D). 세 번째 단점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이 언급되었다. 평가자가 부처사업 수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처가 평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 A).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환류의 어려움이 주요한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연구 위탁형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환류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H).

마지막으로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장점은 ①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② 평가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③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장점은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인데, 부처 산하기관이 정책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진행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등 평가과정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주요한 장점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C, E, F, H, I). 또한 전문가들은 부처 산하기관이 정책사업 평가를 진행할 경우,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 및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파악하였다(전문가 C, D, I). 마지막으로 평가결과가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책 개선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점도 주요한 장점으로 파악되었다(전문가 B, C).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단점은 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② 평가결과의 신뢰성 미흡, ③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부처에 의한 자원 의존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단점으로 지적되었다(전문가 A, C, D, F). 또한 일부 사업평가의 경우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며, 평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었다(전문가 B, C).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에 비해 심층원인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전문가 C).

표 V-6. 전문가자문 결과 - 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장단점 분석

유형	장점	단점
평가 센터 위탁형	① 평가의 안정성 -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충분한 시간의 확보로 매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평가 실시 가능 (B, C, D, E, F, H, I)	① 평가 운영관리 노력 저하 가능 - 평가방법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내부 전문가들의 노력 투입이 저하되는 등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C, F)
	②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로 다부처 사업 평가에 적합 - 연구기관 내부 전문인력 풀 통해 높은 전문성 확보 가능하며 정책평가 독립성 및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부처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부처 사업평가에 종합적, 전문적 관점으로 평가 가능 (A, B, C, D, E, G)	② 평가절차의 개선가능성이 낮음 - 평가센터의 평가역량 부족에 대한 개선 및 조치가 어려움 (G)
	③ 평가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 - 안정적인 정책 - 평가 파트너십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F, G, H)	③ 고비용 - 연구 위탁형에 비해 높은 비용 (G)

유형	장점	단점
	④ 평가절차의 효율성 - 평가센터에 위탁됨으로써 매년 (연구) 위탁기관을 선정, 재반복하는 불필요한 평가절차 줄일 수 있음 (E)	④ 피평가자와 평가자간 유착 가능성 - 평가기관의 일원화는 피평가자와 평가자간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A)
연구 위탁형	① 전문영역 사업평가의 전문성 확보 가능 - 사업의 전문가집단에 위탁을 의뢰하고, 해당기관에서 관련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며, 평가 전반의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B, D, E, F, I)	① 평가의 불안정성 및 불연속성 - 예산확보와 전문 담당 인력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아 안정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움 (C, D, G, H, I) - 매년 위탁기관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책평가의 시계열적 연속성 확보가 어려우며, 평가기관의 역량에 따라 평가수준도 상이함 (D, F, I)
	② 평가운영의 유연성 및 신속성 - 평가절차나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보다 신속할 수 있음 (C, G)	②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한 평가 질 저하 - 연구 위탁형의 실질적인 평가는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사전 작업이 모두 종료된 4월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 집중할 시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매우 부족함 (C, D)
	③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평가 가능 (G)	③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 평가자가 부처사업 수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부처가 평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됨 (A)
	④ 정책변화의 신속한 반영 - 매년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음 (H)	④ 평가 결과 환류의 어려움 -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평가 결과의 환류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 (H)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①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 평가 진행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등 평가 과정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C, E, F, H, I)	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 부처 산하기관은 부처에 의한 재원 의존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직접적인 피감독기관이므로,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A, C, D, F)

유형	장점	단점
	② 평가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 및 인력의 안정적 확보 가능 (C, D, I)	② 평가 결과의 신뢰성 미흡 - 일부 사업평가의 경우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존재하지도 하며, 연구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B, G)
	③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정책개선 효과 - 평가결과가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책 개선에 잘 반영될 수 있음 (B, C)	③ 전문성 부족 - 연구기관에 비해 심층원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 (C)

(2) 적합한 추진체계 유형의 검토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의 유형과 관련해서 전문가 9명 중 7명 (78%)이 “평가센터 위탁형”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명은 기타 의견이었으며, 연구 위탁형과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의 응답률은 0%였다. 평가센터 위탁형을 선택한 이유로는 위에서 살펴본 평가센터 위탁형의 장점 중 평가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이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평가센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B, D).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의 평가센터형태 또는 연구 위탁형태에서 실시되는 일원화된 평가방식으로는 광범위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I는 ‘청년정책과 같이 넓은 범위의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어느 한 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독립 법인을 설립하거나 청년정책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평가역할을 분배하여 영역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 C는 ‘청년정책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육적·사회적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평가체계 역시 다차원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연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평가센터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평가의 안정성과 평가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파악된다. 다만, 기타 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청년 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활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의 총합이며 다양한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평가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영역별 정책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3) 평가 예산규모의 검토

연구진은 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타 시행계획 평가의 소요예산에 근거하여 청년 정책 평가가 평가센터 위탁형 또는 연구 위탁형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평가범위 (① 중앙부처, ②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제시하였다. 기존 정책 평가 사례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진은 평가센터 위탁형으로 중앙부처 사업만을 평가할 경우 5억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10억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20억원의 예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위탁형의 경우, 기존의 연구위탁 평가사업 예산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앙부처 사업만을 평가할 경우 2억원,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할 경우 4억원,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8억원의 예산이 적절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추진체계별 예산규모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1(전혀 타당하지 않음)에서 5(매우 타당함)까지 리커트 척도로 전문가가 답하도록 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V-7>와 같다. 결과해석에 유의할 점은, 해당 문항은 평가 유형별로 특정 범위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었으나, 답변을 한 많은 전문가들이 예산규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평가유형 및 평가범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혼합하여 타당성의 정도에 응답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평가범위의 예산 타당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해당 평가의 예산규모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범위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문항은 예산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6가지 평가유형, 평가범위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를 묻는 문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7. 전문가자문결과 - 추진체계 및 평가범위별 예산 타당도

평가유형	평가범위	예산	타당하다 (4,5)고 응답한 비율
평가센터 위탁형	중앙부처	5억원	62.5%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10억원	78%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20억원	25%
연구 위탁형	중앙부처	2억원	29%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4억원	25%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8억원	0%

먼저,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평가센터 위탁형 /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소요예산 10억원’이었다. 평가센터 위탁형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평가했을 때 추정 소요예산 10억원에 대해 전문가 9명 중 7명 (78%)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타당하다고 응답하지 않은 2명의 경우, ‘중앙부처 예산의 1 / 7에 불과한 광역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데 예산을 2배로 증가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출장비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 정도 수준은 과다하다 (전문가 F)는 의견, ‘평가 예산은 평가계획이 잡혀야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 (전문가 B)’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유형은 ‘평가센터 위탁형 / 중앙부처 / 소요예산 5억원’이었다. 평가센터 위탁형으로 중앙부처사업만 평가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억원의 예산규모에 대해 전문가 8명 중 5명 (62.5%)이 타당하다고 답하였다.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3명은 예산규모가 많거나 적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청년정책을 주무하는 취지가 중앙 - 지방간 정책연계 강화 및 분절성 해소’에 있으므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전문가A), 또는 ‘평가 예산은 평가계획이 잡혀야 응답이 가능 (전문가 B)’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위탁형으로 실시할 경우, 연구진은 2억원 (중앙부처), 4억원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8억원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제시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구 위탁형의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작다는 의견 (전문가 B, H)과 과다하다는 의견 (전문가 F)이 모두 제기되었다.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H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고려할 때 중앙부처 평가에 3억원, 광역자치단체까지 6억원, 기초자치단체까지 1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문가 H)’고 이야기 하였으며, 전문가 B는 ‘과제당 (평균 예산이) 5천임을 감안하면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예산에서 평가예산 비중이 과소한 실정이다.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책성과와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사후 평가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예산의 0.1 ~ 0.05% 수준을 평가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전문가 F는 ‘연구 위탁형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에 비해 과다하다. 시행계획 점검은 매년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첫해에 평가 기반 구축 연구와 동시에 진행하면 타당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평가센터 위탁형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규모는 5억원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가센터 위탁형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체계 유형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만약 연구 위탁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가 진행될 경우, 적절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정책평가 위탁사업의 예산규모가 1억원 내외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평가 역시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평가 예산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경우, 다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을 모두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또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등과는 평가 업무의 강도나 범위가 다를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시 유의점 검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시 유의점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섯 가지 유의점은 ①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수립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② 담당기관의 협조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예산 안정성 확보, ④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⑤ 평가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먼저, 청년정책은 다부처 평가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두어야 하며, 타 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전문가 A, G). 둘째,

이와 연장선상에서, 정책평가에 대한 다양한 부처 담당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E, G). 셋째, 청년정책의 범위와 다양성, 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독립성과 영역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평가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I, B, H). 넷째, 정책 대상자로서 청년층이 갖는 복잡성 및 다양성을 평가체계에 반영해야 하며, 청년정책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 C).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용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가 적절한 비율로 평가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평가 설명회 및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 F).

표 V-8.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 시 유의점

영역	응답 내용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수립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청년정책은 부처의 정책 간 분절성과 비연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권한과 기능을 나누는 접근을 최대한 지양하고, 명확하게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두어야 함. 현재 기재부 등 청년정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들이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전문가 A) - 청년정책의 범위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기능을 포괄할 정도로 넓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전문가 G)
담당기관의 협조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담당기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또는 협조)이므로,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 E) - 중앙부처 평가에서 각 청년업무와 연관된 주무부처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평가업무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주무부처의 협력과 조정업무가 매우 중요함 (전문가 G)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예산 안정성 확보	청년정책의 범위와 다양성, 그리고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독립성과 영역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의 평가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문가 I)

영역	응답 내용
	• 청년문제는 오랫동안 핵심이슈였음에도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로 활용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전문연구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되 평가센터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TO를 확보하고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전문가 B) •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초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전문가 H)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층이 갖는 복잡성-다양성을 평가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임. 청년정책의 효과는 비단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심도 깊은 고민 필요 (전문가 C)
평가 질 제고를 위한 노력	•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내용 전문가와 평가 전문가의 비율이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내용 전문가의 경우 평가 기제에 부족함이 있어 평가 전문가의 경우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도 있음. 또한 센터에서 중앙-광역-기초를 직접적으로 컨택할 것인가, 간접적으로 컨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평가들을 마련한 후 설명회,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회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전문가 F)

3. 평가체계 구축안

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를 <표 V-9>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이 2020년 말 발표되면, 시행령에 따라 부처 및 지자체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되며,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21년 말부터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청년정책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정책 사업에 따라 1년 단위의 단기평가와 2년 이상의 중장기 평가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1년 단위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안을 제안하였다.

2021년 제 1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의 목적은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2021년도 제 1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에서는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계획상에 발표된 청년정책 전체 사업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제1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정책대상 수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약 14개 내외 부처 182개 내외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역별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시행계획 평가와 더불어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평가방법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등 영역별 전문가들이 고루 포함된 25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청년이 평가위원회의 1 / 4 이상(전체 25명일 경우 7명)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평가과정은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되, 집체식 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성을 낮추고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평가 절차 중 하나로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30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참여단(200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775명)을 출범하였으며, 9월 19일 청년의 날에 추가모집을 통해 전체 1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청년참여단과 청년패널의 역할 중 하나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 환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는 청년정책평가단의 시행계획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되며, 정부업무평가 및 향후 시행계획 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부터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시에는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의 진행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계획 일정은 현재 시행령에 따를 때 ① 2021년 1월 31일 시행계획 제출, ② 2022년 2월 28일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③ 2022년 6월 30일 추진실적 평가 및 통보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2022년 시행계획 수립에는 반영이 불가능하며, 그 다음해인 2023년 시행계획부터 반영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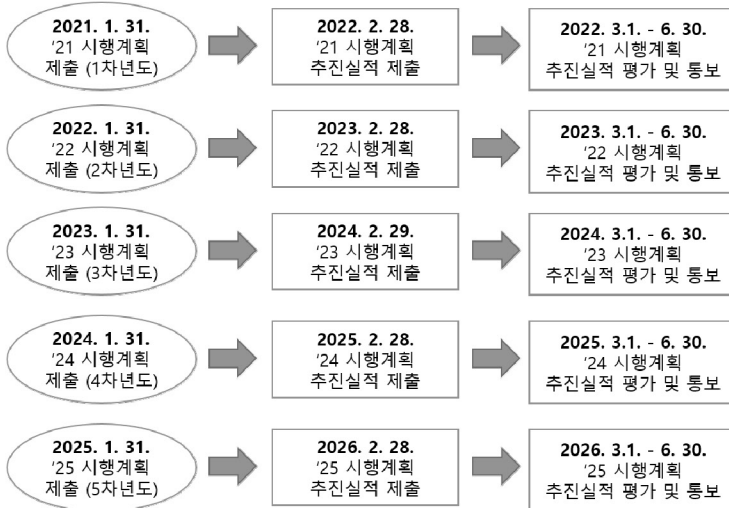


그림 V-1. 청년기본법 시행령 상 평가일정

그러나 청년정책 평가의 목표가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결과는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행계획 평가 일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시행계획 평가결과의 반영을 위해서는 시행계획 제출일을 2월 28일로 늦추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일을 12월 31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2월 31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1월 1일부터 한 달간 평가 및 통보를 실시하고, 이후 한 달간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28일에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일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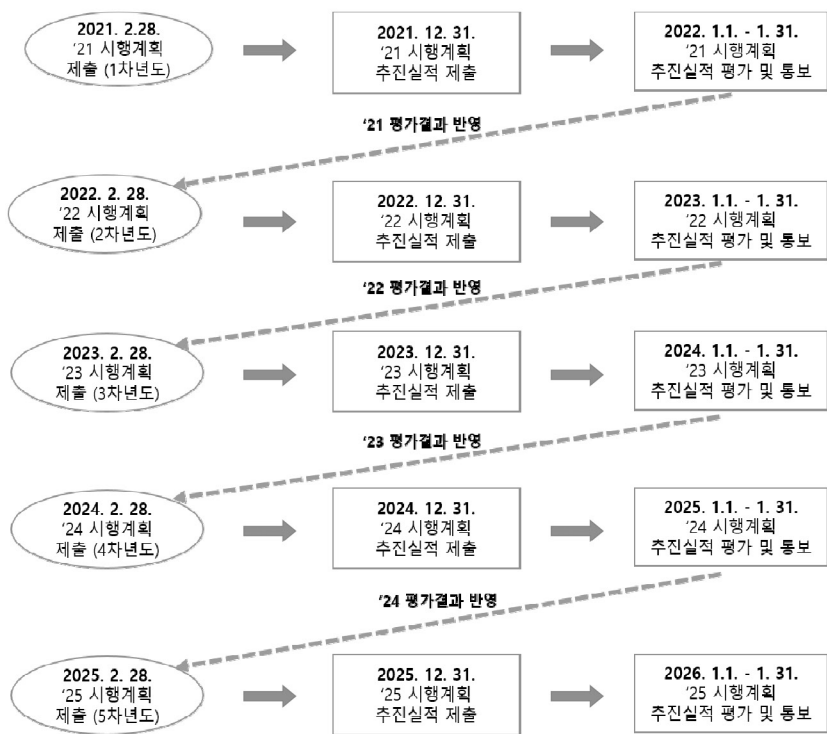


그림 V-2. 청년기본법 시행계획 평가일정 수정안

평가기간이 한 달로 짧아 평가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을 수는 있으나, 평가지표 중 정책집행 과정과 정책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영역은 1월 1일 이전에 미리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적 제출기일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9.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2021년 1월 31일 발표예정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021년 말부터 평가 예정
평가목적		•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21)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청년정책 기본 계획·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청년정책 간 정합성 강화 및 청년의 삶 개선
평가 대상	기관	•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14개 내외 부처)
	과제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모두 평가(182개 내외 사업)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별도 예산)
	기간	• '21.1.1. ~ '21.12.31.
평가방법		• 영역별 전문가(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를 고루 포함한 25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하되, 평가위원회의 1 / 4 이상 청년을 포함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되, 집체식 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성 낮추고 평가의 신뢰도·타당도 확보 • 평가 절차 중 하나로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의 정책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국무조정실의 온·오프라인 청년참여단 활용)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V-10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부처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조정에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정합성 강화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자료로 활용

항목	내용
	※ 추후 지자체 평가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정책컨설팅 추진
평가일정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출 ('21. 2. 28.)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21. 12. 31.)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및 통보 ('22. 1. 31.)

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본 평가지표안은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내용을 포함하되,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이론(이근주, 2018; 이석환, 2018)과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먼저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정책성과의 달성도 세 가지를 제안한다. 본 평가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1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가장 많은 배점인 40점을 할당하였다는 점이다. 계획수립의 적절성은 계획 수립시 청년의견 수렴도 10점, 사업목적의 타당성 5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20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5점으로 구성된다. 2차년도 시행계획 평가부터는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을 평가지표로 제안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수립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집행의 충실성은 총 30점이며, 사업 집행의 충실성 10점,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충실성 10점, 유관기관 협업정도 10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의 달성도는 30점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10점, 정책효과성 10점, 정책체감도 10점으로 구성된다.

또한, 평가지표는 동일하되 세부 평가지표는 정책영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영역별 정책 내용과 추진체계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동일한 평가지표들을 일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을 설정함

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표에서는 평가 지표별 세부내용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표 V-10.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예)		점수
계획 수립의 적절성 (40)	계획수립시 청년의견 수렴도	정량·정성	정책사업 계획 수립시 청년공청회, 청년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10
	사업목적의 타당성	정성	- 사업목적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목적이 주요 청년 문제 및 청년 욕구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5
	사업내용의 적절성	정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연계되는지 여부 - 사업대상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 대상자이며, 선정방식이 공정한지 여부 -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및 수혜자 1인당 소요예산 (대상자 수 / 전체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추진체계가 사업내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20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되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성과 목표치가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 (2차년도부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5
	전년도 평가 결과 반영의 충실성* (2차년도부터 포함)	정성	전년도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정책 집행의	사업 집행의 충실성	정량	-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 추진계획상 예산 집행 여부	10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예)		점수
총실성 (30)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총실성	정량· 정성	- 청년 및 정책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환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 청년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며 청년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였는지 여부	10
	유관기관 협업 정도	정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부처, 타부서, 유관 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10
정책 성과의 달성도 (30)	성과목표 달성도	정량	• 당초 설정한 성과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10
	정책 효과성	정성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10
	정책 체감도	정량	• 전체 청년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느끼는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등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정도	10

※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은 평가년도에 따라 수정 : 1차년도 평가에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가장 큰 비중 (40점)을 두되, 2차년도부터는 정책집행의 총실성 및 정책성과의 달성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정.

※ 평가지표의 세부내용은 정책영역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의 특성에 맞게 영역별로 설정.

3)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구축안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구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정책 평가의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청년정책과, 청년권익증진과, 청년소통과 등에서 청년정책 총괄 및 조정, 청년정책 분석 및 점검·평가, 청년정책 행사·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다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정책 평가체계의 소관부처는 국무조정실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평가 추진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청년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를 통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평가지원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중 청년정책 분석·평가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청년기본법 제 9조, 동법 시행령 제 6조). 전문가 자문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하며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의 수립을 통해 매년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주요 정책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센터 위탁형, 연구 위탁형, 부처 산하기과 활용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도, 청년정책의 특성상 평가센터 위탁형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중앙 부처 청년정책 분석·평가이다. 2021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정책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영역별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때 영역이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 등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여, 타 정책사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는 지자체 청년정책 분석·평가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분석·평가의 경우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지자체별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의 정책 컨설팅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업무는 청년정책 현안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 청년정책 의제 개발 및 현안중심 이슈별 정책 자료 작성, 청년정책 현안 대응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청년정책 분석·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 위탁형 정책평가에서는 연구기간 및 사업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상시적 현안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석·평가센터 지정을 통해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청년 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청년 및 정책전문가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분석·평가센터에 필요한 인력구성은 10명, 총 예산은 연간 10억 원을 제안한다. 인력구성과 예산은 평가센터 위탁형인 청소년정책 추진실적평가, 고용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 부처산하기관 활용형인 청년고용지원정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의 인력규모와 예산, 그리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였다. 연구 위탁형을 활용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는 1억 원 내외(예: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평가센터를 통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 및 부가사업 수행은 4억 원 내외(예: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센터 또는 부처 산하기관을 통한 심층 개별사업 평가 및 부가사업 수행은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예: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청년고용지원정책평가). 연구진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지속성·안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가센터 위탁형의 정책사업 평가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의 면밀한 세부 지표개발, 자료수집, 평가, 컨설팅, 청년정책 현안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V-11.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구축안

항목	내용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평가 추진기관	청년정책 분석·평가센터 (분석·평가지원기관)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 9조 청년기본법 시행령(안) 제 5조

항목	내용	
주요 업무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석·평가	• 매년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 시행 (14개 부처 182개 정책사업 내외) • 영역별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우수 청년정책 사례 발굴·홍보
	지자체 청년정책 분석·평가	•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년정책 평가 시행 • 지자체별 주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청년정책 발굴·확산 • 미흡 지자체의 경우 정책 컨설팅 실시
	청년정책 현안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 의제 개발 및 현안중심 이슈별 정책 자료 작성 • 청년정책 현안 대응 위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청년정책 분석·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인력 구성	10명 (센터장 1명, 박사급 연구원 3명, 석사급 연구원 4명, 행정원 2명)	
예산	10억원	

4. 결론

본 연구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 최근 수행된 주요 정책평가의 평가지표 및 평가 추진체계 등을 분석한 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안)를 제안하였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이 활용되었다.

먼저, 정책 평가지표 사례분석의 경우, 2020년 청년정책 평가, 정부업무평가, 사회보장시행계획평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청년고용 지원정책 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주요 정책평가의 평가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추진 체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후 (평가센터 위탁형, 연구 위탁형, 부처 산하기관 활용형) 8가지 사례에 대해 각 유형별 평가내용, 인력규모, 예산규모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 모델(안)은 평가개요 및 평가지표에 대한 제안과 추진체계에 대한 제안으로 구분된다. 기존 정책평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15명의 정책평가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개요(안), 평가지표(안), 평가 추진체계(안)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기초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의 확정, 영역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한 영역별 평가지표 세부내용의 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8).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 교육부 (2020). **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 국무조정실 (2019a).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국무조정실 (2019b).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2020 ~ 2022)**.
- 국무조정실 (2020a). **(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세종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2020b). **'20년 청년정책 업무지침 및 평가계획**. 세종 : 국무조정실.
- 국민참여 입법센터 (202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091?lsNm=%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 **청년기본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김강호, 송수종, 이해나 (2019). **기업의 청년고용정책 인식 조사 및 제언**. 충북 음성 : 한국고용정보원
- 김기현 (2018). **청년프레임**. 파주 : 이담북스.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배진우, 이민정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협동연구 총서 20 - 23 - 01). 세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미곤, 강지원, 이상영, 정영철, 서제희, 이기호, 채수미, 윤시몬, 김성아, 이예나, 김신영, 서보순, 장현진, 정익중, 조동훈 (2018).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세종 : 보건복지부.
- 김종호 (2016).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 (3), 205 - 222.
- 김주환 (2009).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평가연구 : 자체평가의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 (3), 187 - 218.
- 김지원 (2019). **정책평가론**. 서울 : Know Press.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V** (연구보고 19 - R02).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태준 (2012). 자체평가시스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3 - 2028.
- 남궁근 (2010). 정책분석평가와 윤리. **정책분석학회보**, 20 (4), 37 - 56.
- 남궁근 (2019). **정책학 제3판**. 파주 : 법문사.
- 노화준 (2018). **정책평가론 제5판**. 파주 : 법문사.
- 류영아 (20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4 (4), 242 - 264.
- 박노옥, 원종학, 박선영, 우지은, 임소영 (201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4 ~ '18) 20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세종 : 보건복지부.
-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박중훈 (2010).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0 - 05).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 - R53). 세종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심재승 (2019). 정책평가의 활용과 평가의 현상 : 평가활용의 확장에 의한 사후적

- 후생 증대로의 기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 (4), 343 - 361.
- 오운섭, 이아영, 임완섭, 함영진, 서제희, 황남희, 고경표 (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정책보고서 2018 - 71). 세종 : 보건복지부.
- 오철호 (2018). 문제제기 : 사람, 참여 그리고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재인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 (2), 303 - 316.
- 윤수재 (2002).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인지분석 : 정책과 항목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16 (1), 213 - 232.
- 이근주 (2018).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 (2), 341 - 362.
- 이상호, 박미화, 신희연, 표한형, 장운섭, 박솔잎 (2018). **청년창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충북 음성 : 한국고용정보원.
- 이석환 (2018). 시민집중형 정책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 (2), 317 - 340.
- 이운식 (2018). **정책평가론 제3판**. 서울 : 대영문화사.
- 이창길, 최성락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 분석. **행정논총**, 48 (1), 97 - 119.
- 이한준, 김성태 (2020). 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 (2), 29 - 48.
- 장기영, 손경현 (2018). **고용장려금 사업 심층평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중심으로**. 충북 음성 : 한국고용정보원.
- 조현정, 이삼열 (2015). 자체평가 관대화에 대한 실증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0 (2), 1 - 3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2019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사업 설명회** (내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20a). **청년센터 운영** (내부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20b). **2020년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업무보고** (내부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 **2020년 고용영향평가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

허만형, 김주환, 이석환 (2008).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2 (1), 1 - 18.

Gibbons, R. & Murphy, K. J. (1990).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chief executive offic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3(3), 30 - 51.

Hatry, H. P. (1999). *Performance measurement: Getting results*. Washington D. C.: Urban Institute Press.

Jones, J., & Wallace, C. D.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An exploration of young people, independence and domestic life*. Open University Press.

Stanton, M. (1991).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Next Step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6), 572 - 575.

○ — 부 록

- 1. 1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 2. 2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 3. 3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부 록

1. 1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연구」 전문가 서면자문 1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2020년 5월 18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팀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실시될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유사 정책 평가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면 자문에서는 정책평가 전문가분들께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면 자문 문항은 (1)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검토 및 유형별 장단점 검토, (2)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시사점 도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분에 귀하의 응답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2020년 5월 25일(월) 정오(12:00)까지 이메일(000@nypire.kr)로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5.18.

연구책임자 배정희 배상

연구책임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	✉ e-mail: 000@nypire.kr
공동연구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	✉ e-mail: 000@nypire.kr

응답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I. 서면 자문을 위한 설명자료

□ 서면 자문 개요

- 자문 목적: ①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및 장단점 검토
②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시사점 도출
- 자문 대상: 정책평가 전문가 10인
- 자문 기간: 2020년 5월 18일(월) - 2020년 5월 25일(월) 정오 12:00
- 자문 방법: 이메일 서면 제출 - CCC@nypire.kr

□ 연구의 배경: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평가방법 등 평가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정책 평가 추진체계와 정책 평가지표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1차 서면 자문에서는 평가 추진체계의 유형별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II.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및 장단점 검토

- 국내 사회 정책의 분석·평가 추진체계는 ① 평가센터 위탁형, ② 연구 위탁형, ③ 준정부기관 활용형으로 아래와 같이 대별될 수 있습니다.

표 1. 정책 분석·평가 추진체계 유형별 사례

유형	내용	평가 사례	평가 기관
평가센터 위탁형	정부부처에서 특정 시행계획 추진실적 또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등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분석·평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청소년정책 시행계획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평가센터
		고용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 위탁형	정부부처가 매년 연구용역 방식으로 특정 시행계획 또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아동정책 시행계획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시행계획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정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준정부기관 활용형	개별 부처에서 위탁집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 기관의 고유예산으로 해당 부처의 정책을 분석·평가	청년 고용 지원정책 평가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보험사업 평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1. 위와 같은 3가지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분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유형분류에 따른 평가사례 및 평가기관 중 잘못 기재되었거나 중요사례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3. 정책평가 수행시, **‘평가센터 위탁형’**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내용의 충분성,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예산의 충분성,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장점

단점

4. 정책평가 수행시, **‘연구 위탁형’**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내용의 충분성,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예산의 충분성,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장점

단점

5. 정책평가 수행시, **‘준정부기관 활용형’**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내용의 충분성, 평가절차의 용이성 및 효율성, 예산의 충분성,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장점

단점

III. 청년정책 평가 추진체계 시사점 도출

-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2020년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책 평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어떠한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가센터 위탁형 ② 연구위탁형 ③ 준정부기관 활용형 ④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6-2. 위처럼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수는 현재 총 182개이며, 예산규모는 21조 8,178억원입니다.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의 수는 현재 총 2,792개이며, 예산규모는 3조 3,013억원입니다. 본 연구진은 “평가센터 위탁형”과 “연구 위탁형”을 기준(소관부처: 국무조정실)으로 평가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정책 평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평가센터 위탁형’의 평가범위별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이 추정됩니다. 아래 예산규모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범위	추정 소요예산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1	2	3	4	5
① 중앙부처	5억원	답변				
②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10억원	답변				
③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20억원	답변				

7-2. 위에서 1,2,3 으로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가 범위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① 중앙부처	답변
②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답변
③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답변

8-1. '연구 위탁항'의 평가범위별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이 추정됩니다. 아래 예산규모는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범위	예산규모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1-----2-----3-----4-----5 (매우 타당함)
① 중앙부처	2억원	답변:
②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4억원	답변:
③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8억원	답변:

8-2. 위에서 1,2,3 으로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가 범위	위에서 1,2,3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
① 중앙부처	답변
②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답변
③ 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답변

9.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10.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 관련하여 기타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2020년 7월 14일)

□ 자문회의 개요

- 자문 목적: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및 평가(안) 타당성 논의
- 자문 대상: 청년정책 및 정책평가 전문가 15인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 참관 가능)
- 자문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장소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세미나 회의실
7월 17일 (금) 오전 10시~1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중회의실
7월 17일 (금) 오후 2시~4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중회의실
서면자문 (7월 20일(월) 오전 10시까지)	000@nypi.re.kr로 이메일 송부

□ 연구의 배경: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될 예정 (2021년은 중앙부처만 평가 실시 예정)
-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 본 연구는 정책 평가 추진체계와 정책 평가지표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 이번 자문에서는 정책 평가지표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년정책 평가지표안 및 평가활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I. 청년정책 평가지표 검토

- 본 연구에서 정책평가란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정책평가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 평가지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 1.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목적과 정책내용의 적합성	정성 사업목적과 정책내용의 연계여부	5
	• 계획수립 시 청년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량 청년참여 위원회 개최, 청년 공청회 등을 통한 청년 의견수렴 여부	1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성과지표가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5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정량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10
	• 정책 모니터링 통한 현장 및 청년 의견 수렴 충실성	정량·정성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지 여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10
	• 유관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정량·정성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였는지 여부	10
정책성과의 달성도	• 정책목표 달성도	정량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20
	•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20
	• 정책만족도	정량 정책수혜 대상 청년의 정책 만족도	10

1. 위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누락된 평가지표, 제외해야 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및 점수에 대한 의견 등)

답변

III. 청년정책 평가(안)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 2.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 '21년 부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1년말 평가 예정
평가목적		- 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21)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
평가 대상	기관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과제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모두 평가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 (별도 예산)
	기간	'21.1.1 ~ '21.12.31
평가방법		- 영역별 전문가(일자리, 교육 훈련, 주거, 참여·문화 활동, 복지·금융·건강)를 고루 포함한 2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1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정책컨설팅 추진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2. 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특히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록 -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결과

1. 2020년 청년정책 평가

표 3. 2020 청년정책 평가 개요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 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1년말 평가 예정 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을 위해 ’20년 청년정책 평가 시행
평가목적		-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노력과 추진실적 점검 평가 -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
평가 대상	기관	14개 중앙행정기관 1그룹(주요 청년정책 4개 이상):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2그룹(주요 청년정책 3개 이하):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과제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제사업을 모두 평가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
	기간	’20.1.1 ~ ’20.12.31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정책이프라(청년참여 기반 구축, 소통·홍보 참여 강화) 및 정책과제(정책 집행의 적절성, 정책의지 및 효과성)에 관한 11개 평가지표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2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참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 개선계획을 수립 이행 - 우수기관과 업무유관자에 대한 포상 실시
평가 일정		-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제출 (’20.4) - 부처별 추진실적 1차 제출 (’20.12) 및 보역(’21.1) ’20년 청년정책 평가결과 발표 (’21.3)

표 4. 2020 청년정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정책 인프라 (40%)	청년참여 기반 구축	정량	- 관련 규정 정비 여부 - 청년위원 위촉 여부 - 청년관련 위원회 개최 여부 등	20
	소통·홍보 참여 강화	정성	- 소통 의사 노력 정도 - 정책 홍보 의사 노력 정도 - 간담회 및 교육 실적 등	20
정책과제 (60%)	정책 집행의 적절성	정량/정성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성과목표 달성도	30
	정책의지 및 효과성	정성	-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청년 민원 제언 처리 실적 - 부처간 협업 실적	30

2.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표 5. 2020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 정부업무평가법 8조에 따라 매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각종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 그 결과를 정책 조직 예산 인사 보수 등에 반영
평가목적		- 국정운영의 성과 및 책임성 제고 - 주요 정책부처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체계 전환 및 상위목표(전략목표) 관리 강화
평가 대상	기관	44개 중앙행정기관(예산금 24개, 차관금 20개)
	주요 정책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모두 평가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
	재정 사업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재난안전사업 - 균형발전세부사업
	행정 관리 역량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평가방법		- 중앙행정기관별로 '20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출결기관에서 점검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조직관리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 인사와 연계 반영

표 6. 2019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공통지표	성과달성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수준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 성과지표의 도전성
		과제중요도	정부정책 기조와의 연관성 고려
	협업노력도 (기감점)	협업노력도	타부처, 타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정책입안 단계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정책내용과 목적달성의 적합성 - 의견수렴 절차의 적절성
		정책의 시의성	정책수립의 시기적 타당성과 적절성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일정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분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정책집행 1년차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분과위원회의 소통 노력
		후속조치 충실성	전년도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적극적 정책추진	적극적 정책추진역량	- 적극적 정책 추진의 여부 - 대응성

정책집행 2년차 이상	집행과정의 적절성	정책집행의 충실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 준수여부, 모니터링의 적정성 - 현장 의견수렴·점검 및 정책반영 - 문과위원회와의 소통 노력
		후속조치 충실성	전년도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등을 통한 노력 정도 및 정책성과 향상 여부 평가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의 발생 정도	-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여부

표 7. 2019 교육부 자체평가 지표

평가지표	세부내용
계획수립의 적절성(15점)	정책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전년도 한류 및 국민소통계획 등을 평가
진행과정의 충실성(25점)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추진계획별 적기 완수 여부, 대내외 홍보 및 의견수렴 과정의 충실성 등을 평가
정책효과(50점)	성과지표 달성여부,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 및 부수적 효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
대표성 및 노력도(10점)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업무추진 전 과정에서의 부서 노력정도(갈등해소, 협업 등) 등을 평가

표 8. 2019 국토교통부 자체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과제 난이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 정량화, 결과성격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 발굴 정도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반영 여부 - 사회적가치 실현 지표 가점
	성과지표의 난이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이해관계자 의견대립 정도 -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과제이행 노력도	계획이행의 충실성	계획의 기한 내 완료여부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성도 -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
과제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정도	- 정책효과 발생 정도 -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
	정책만족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3.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표 9.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인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 - 이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
평가목적	아동정책 전반에 걸친 실적 수준 제고 및 제강도 향상
평가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책
평가방법	- 총 14명의 평가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9명, 외부 전문가 5명)을 구성 -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를 위한 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진 양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사전 평가를 진행 -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사전 및 대면 평가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10-13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컨설팅 진행

표 10. 2017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중앙정부 평가지표	기획의 적절성	정성	-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20
	계획의 집행도	정량/정성	- 예산집행률 - 추진계획 이행도	30
	성과 달성도	정량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 - 성과지표 신뢰성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50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기획의 적절성	정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 여부	10
	추진 방식의 적절성	정성	- 수립 절차의 적절성 -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20
	성과 달성도	정량	- 드림스타트 수혜율 -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 -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60
	기반 구축	정량	-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 아동친화도시 구축	10

4.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표 11.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청소년 기본법 제14조 제4항)
평가목적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 •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역간 격차 해소
평가대상	• 17개 시도 및 114개 시·군·구(기초지자체 50%, 격년제) 청소년정책
평가방법	• 국정과제(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와 연계하여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 시·도별 청소년정책 효과율 점검하여 국정운영과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별 청소년의 삶의 질 분석 • 청소년의 활동 참여 영역과 보호·복지 영역,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시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15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위원단의 최종평가의견을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별하여 정책컨설팅을 추진

표 12. 2019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구분	평가지표
정책형성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량/정성)	시·도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군·구	•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수준 (정량/정성)	공통	• 추진체계의 적절성 • 자체예산 확보노력(국비 및 시·도비 제외)
정책집행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성)	공통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정책소통 노력 (정량/정성)	시·도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시·군·구	•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정책성과	정책성과 및 효과성 (정량)	시·도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 청소년정책의 파급효과
		시·군·구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5.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표 13.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요 정책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평가목적	- 사회보장의 비전과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
평가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317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19개) 총 183개 과제
평가방법	-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부처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체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하는 작업 수행 - 과제별로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작성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17 참조
평가결과 활용	-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자기관단을 강화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실적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정책분야별로 추진성과가 우수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표 14. 2018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사업개요 (20점)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기본계획과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과정 (25점)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예산집행 실적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
성과달성도 (5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
	목표달성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6.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표 15.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를 심의
평가목적	- 법적 근거에 의한 정책의 평가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환류
평가대상	2018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대 분야의 총 179개 과제(저출산 분야 86개, 고령사회 분야 86개, 대응기반 강화 분야 7개 과제)
평가방법	- 각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기초평가)와 핵심성과지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핵심 성과지표 총 13개 중, 산출이 불가능한 "고령친화산업 비중"과 자료의 특성으로 업데이터가 불가능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제외한 총 11개의 평가지표(저출산 분야 7개, 고령사회 분야 4개) 활용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II-19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자료 등으로 활용 - 평가결과를 향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평가체계 개선에 반영

표 16. 2018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핵심성과지표

평가항목	성과지표	주요 정책 내용
저출산 분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고용률	- 청년고용대책 - 노동개혁 과제 - 일학습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일·가정양립 지원 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 사교육 경감 - 공교육 정상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령화 분야	노인상대빈곤율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노인교통사망률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여성고용률	- 여성 재취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고용률	- 정년제도 개선 -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반

7.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표 17.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 개요

항 목	내 용
평가 추진배경	- 대통령령 제387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6대 역점분야(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기관 간 기관 내 간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데이터 과학에 일관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를 중심으로 20개 중점과제, 79개 세부사업이 추진
평가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평가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의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방법	-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부혁신평가단과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을 선발하여 이루어진 국민현장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3단계로 등급을 구분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Ⅲ-21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표 18. 2019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평가지표

평가항목	주요 정책 내용	배점
혁신역량 실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 학습활동	10
혁신 성과	핵심사업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13
	포용적 행정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가치 강화 정책조성 노력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성과 - 중중중재인 생산물 구매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충족도	21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제도 활용 성과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활성화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 - 정책 협업 조정 - 협업성과 - 갈등관리	24
	신뢰받는 정부 - 부처별 신뢰도 - 부처별 청렴도(채용비리 실적지표 포함) - 성평등 기여도 - 정부24 공공서비스 만족도 현행화 - 선제적 서비스 성과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성과 - 일하는 혁신 추진성과	17
혁신성과 홍보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5
국민체감도	국민평가단 및 일반국민 혁신성과 체감도 평가	10
적극행정	적극행정 추진성과	+5

3. 3차 전문가 자문 조사표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연구」 전문가 자문 (3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2020년 7월 23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지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자문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진은 지난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을 수정하였으며, 이번 시면자문에서는 수정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및 '평가지표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분에 귀하의 응답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까지 이메일(000@nypire.kr)로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3.

연구책임자 배정희 배상

연구책임자	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000-0000	✉ e-mail: 000@nypire.kr
공동연구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0-0000	✉ e-mail: 000@nypire.kr

응답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I.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검토

- 본 연구에서 정책평가란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및 지난 전문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평가안 초안은 부록 참조)

표 1.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 •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1년 말 평가 예정
평가목적		•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21)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청년정책의 부처간 통합성 강화
평가 대상	기관	•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14개 내외 부처)
	과제	• 각 부처의 청년정책 전체사업을 모두 평가 (182개 내외 사업) • 주요 청년정책은 심층평가 실시 (별도 예산)
	기간	• '21.1.1 ~ '21.12.31
평가방법		• 영역별 전문가(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를 고루 포함한 2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위원회의 1/4 이상 청년을 포함 • 평가 절차 중 하나로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결과를 반드시 포함 (국무조정실의 온·오프라인 청년살아단 활용)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되, 집체식 평가를 통해 평가자의 주관성 낮추고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 확보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2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부처별 청년정책 시행계획('21) 조정에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통합성 강화 •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추후 지자체 평가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정책컨설팅 추진
평가임정 (시행령 근거)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출 ('21. 1. 31.) ※ 필요시 '20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 전)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하여 '21 시행계획 수정·보완 ('21. 3. 30.)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21. 12. 31.) • '21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및 통보 ('22. 1. 1. ~ 22. 2. 28.)

1. 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답변

II.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검토

- 다음으로, 주요 정책평가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2021년 청년정책 평가지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 초안은 부록 참조)

표 1.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내용	점수
계획수립의 적절성 (40)	• 계획수립시 청년의견 수렴도	정량·정성 - 정책사업 계획 수립시 청년공청회, 청년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10
	• 사업목적의 타당성	정성 - 사업목적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목적이 주요 청년 문제 및 청년 욕구에 기반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5
	• 사업내용의 적절성	정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연계되는지 여부 - 사업대상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 대상자이며, 선정방식이 공정한지 여부 -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및 수혜자 1인당 소요예산 (대상자 수/전체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15
	• 추진체계의 적절성	정성 - 추진체계가 사업내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5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되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성과 목표치가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2차년도부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5
	•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의 충실성* (2차년도부터 포함)	정성 - 전년도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정책집행의 충실성 (30)	• 사업 집행의 충실성	정량 -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 추진계획상 예산 집행 여부	10
	•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충실성	정량·정성 - 청년 및 정책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 현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여부 - 청년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며 청년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였는지 여부	10
	• 유관기관 협업 정도	정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부처, 타부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한 정도	10
정책성과의 달성도 (30)	• 성과목표 달성도	정량 - 당초 설정한 성과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10
	• 정책 효과성	정성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10
	• 정책 체감도	정량 - 전체 청년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느끼는 도움 정도 및 중요도 등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정도	10

※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은 평가년도에 따라 수정: 1차년도 평가에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에 가장 큰 비중(40점)을 두되, 2차년도부터는 정책집행의 충실성 및 정책성과의 달성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정

2. 위 청년정책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누락된 평가지표, 제외해야 할 평가지표,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및 점수에 대한 의견 등)

답변

III.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시 유의사항

3.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답변

-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및 평가지표(안) 초안 (2차 자문)

표 1.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안) - 초안 (2차 자문)

항목	내용
평가 추진배경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부처 및 지자체별 '21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 '21년 부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21년말 평가 예정
평가목적	- 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21) 추진실적 점검·평가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
평가 대상	기관
	과제
	기간
평가방법	- 영역별 전문가(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문화·활동, 복지·금융·건강)를 고려 포함한 2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표 2 참조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정책컨설팅 추진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표 2.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 초안 (2차 자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목적과 정책내용의 적합성	정성 사업목적과 정책내용의 연계여부	5
	계획수립 시 청년 의견수렴의 충실성	정량 청년참여 위원회 개최, 청년 공청회 등을 통한 청년 의견수렴 여부	10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정성 성과지표가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	5
정책집행의 충실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정량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10
	정책 모니터링 통한 현장 및 청년 의견 수렴 충실성	정량·정성 청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지 여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10
	유관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정량·정성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였는지 여부	10
정책성과의 달성도	정책목표 달성도	정량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20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20
	정책만족도	정량 정책수혜 대상 청년의 정책 만족도	10

연구보고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인 쇄 2020년 8월
발 행 2020년 8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대표 이호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 (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